

연구보고 2017-000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17.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재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상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 이번 연구는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고려해야할 점과 문제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 현행법은 젠더폭력 문제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개별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는 법률 간의 중복과 혼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시각에 성별간의 불평등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젠더 관점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확장된 ‘젠더폭력’을 부각할 수 있도록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정의는 혐오까지도 포함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현재와 같이 복지관점에 입각해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체제로 추진체계가 존재하기보다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젠더관점에서 폭력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독자적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젠더폭력 관련 통계 구축, 백서발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폭력감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독자적인 기존법이 제정되면 독립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젠더폭력관련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비슷한 서비스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정리되어야 한다. 또

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예방교육 관련 법률을 모두 기본법에 포함시켜서 일관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연구는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위해 법 형식 및 기존 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 법제화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정리, 젠더폭력 등의 개념 정리, 법체계 및 구성 내용, 제정(안) 마련 등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 현장단체 간담회, 전문가 정책자문회의 및 FGI(초점집단인터뷰), 젠더폭력방지포럼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2. 법제명의 표현과 쟁점

-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우려하는 상당수 원인은 젠더라는 표현에 대한 모호함과 그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젠더(gender)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성(sex)과는 구분되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사회적,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이며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통칭하며, 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 혹은 gender violence)은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혹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남성성·여성성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인지한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 한 개인을 겨냥하는 폭력으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 협박, 강압, 자유의 임의적 박탈과 경제적 박탈을 포함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 주된 피해자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메커니즘이 성별 위계와 관련이 없을 경우 본 개념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춰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의 명칭으로 ‘젠더폭력’을 법명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용어로 ‘여성폭력’을 법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젠더폭력 표현을 유지해야 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용어를 통해 우리 사회 내 여성폭력이 여성의 차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으며 향후 반폭력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입법적 전략상의 이유로 ‘젠더폭력’보다 ‘여성폭력’ 용어를 사용하면 기본법의 대상과 내용을 축소하여 이해할 소지가 있다.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 하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표현을 ‘여성폭력’으로 한정할 경우 현장의 반대급부가 나타날 수 있다.

- 젠더라는 표현은 현재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외래어이자 일상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세대별 용어의 친숙함이나 개념에 대한 수용정도는 다를 것이다. 대체로 젊은 층에서는 젠더 표현이 상대적으로 친숙한 편이며 그 개념과 함께 기존의 성차별과 성희롱 같은 문제에도 이전세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와 같은 일선 현장에서는 법령 표현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 법 형식에 대한 검토

- 법의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방향은 법의 형식은 일반법으로 하되, 이를 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개별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법의 내용 안에 처벌규정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법은 법제명에 ‘기본법’이라는 표현의 유무를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의제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그 젠더폭력과 관련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해당 분야에서 지도법 및 기준법으로서 각 개별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분야 및 사항의 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 인식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그 이념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젠더폭력에 관련한 기본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이 “근원적으로 다원화된 가치 및 체계를 국가공동체 차원에서 조율하고, 일관적으로 효과적으

로 정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화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젠더폭력 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은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의와 그 목적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법 법제화를 위해 ‘조율’과 ‘통합’ 및 ‘체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 개인과 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 법 형식에 대한 검토 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UN과 EU등의 젠더폭력에 관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폭력의 원인의 상당부분이 성별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난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에서 젠더폭력과 성평등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하에 운영되는 정책추진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추진체계, 기본시책, 통계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외국의 입법사례에서도 「여성폭력방지법」 자체가 별도의 독립된 입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것이다.
- 다음으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기본법은 기존의 관련법의 공통된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포함하지만 정책과 추진체계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 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별법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경우 젠더폭력과 관련된 정부의 계획, 이에 대한 감독, 형사사법체계 내 전담인력과 이에 대한 성인지 훈련 및 성주류화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젠더폭력의 경우 전체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개별법의 공통사항을 기본법에 포함하고 젠더폭력의 개념을 추가하여 현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온라인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폭력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선 없이 통합된다면 젠더폭력의 개념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본법의 특성과 법의 위계를 생각 할 때 세부적인 논의를 법안에 세세하게 포함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해당 내용은 결국 각 개별법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

-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된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국민에게 법의 내용을 인식시키고 의식의 개혁이 추진되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단순히 ‘상징적인 법’에 머무르는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잘못된 기본법은 제정만큼이나 개정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 필요가 있다.
-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을 구성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폭력피해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상위법으로서의 제정 목적을 살펴본다면 기존의 폭력피해자의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 지금 보다 상향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와 그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둘째, 젠더폭력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에는 기존의 개별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 양상을 포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성희롱과 스토킹, 성적 인신매매,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을 젠더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법안의 총칙에서 보다 명확한 폭력 양태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셋째,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법체계상 크게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과 가해자를 위한 처벌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형법 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협의되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동시에 정비되어야 법의 실행을 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항이 정비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자활을 돕는 재정과 법률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고, 폭력 피해자들을 총괄하여 지원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에 폭력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구분이 아니라 폭력피해자를 위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다섯째, 폭력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일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으나, 각각의 폭력에 유형과 대상별 재발 방지 프로그램과 예방프로그램 역시 중요하다. 이는 통합의 관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앞선 제정과 법률의 지원 등이 뒷받침 된다면 다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수사기관 담당자 교육이 명문화 될 필요가 있다.

5. 개별조항의 내용과 구성

- 전문가 및 관련 현장단체와 회의와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한 세부 쟁점사항을 크게 기본계획과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재발방지, 예방교육, 자료생산, 추진체계 및 관련 기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 법의 기본계획 구성 시 젠더 관점을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젠더폭력에 대한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한다. 법조문 구성 시 보다 강제성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피해자 지원 및 기준에 대한 상향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로 피해자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고, 시설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법조항 구성 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지원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법안을 기본법으로 구성 시 개별법에 있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고 필연적으로 기존의 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을 공동규정으로 묶어 하나로 통합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폭력행위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신분노출과 함께 피해자가 의심받는 2차 피해로 이어질까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게 되는 상황이 여전하다.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문제 삼는 수사기관과 피고인 측 변호사의 인권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상 조치도 없다. 따라

서 수사사법기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기관 역할의 명시가 필요하며 젠더폭력 인식개선을 위해서 미디어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기존 개별법의 젠더폭력 교육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별도로 시행되던 교육을 통합적인 인권교육으로 갈 필요성은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어느 기존의 교육 내용 중 어느 한 부분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폭력예방교육은 피해자, 수요자 및 강사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도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과 폭력감수성이 주요한 콘텐츠로 포함되어야 한다. 법안의 의무화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양성평등과 폭력 예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간의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 자료의 축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료생산은 신규 통계의 생산과 기존통계를 통합한다는 목적을 위해 전반적인 자료생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통계 생산 시 성별분리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전국 데이터 구축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폭력에 대한 불안감, 신종 폭력, 피해자 조사 등 성폭력에 국한되지 않는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데이터생산, 통계모니터링, 추적조사를 위해 관련 기구설치와 국제공조와 협력을 위해 표준화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 추진체계의 설치와 운영의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위원회 설치를 위해 향후 실효성과 실행력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지원 등 현장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전담기구 설치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부처 내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을 논의하거나 기존의 추진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관에서의 피해자 지원 시 기존의 보조금 지원방식이 아닌 별도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6. 법안도출의 방향성

-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되는 법안을 구성 혹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법안은 젠더폭력의 근본원인이 성별 위 계구조와 성별 간 권력불평등에서 나타난 성차별의 한 형태로 보고 이러한 젠더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개별법에서 나타난 법률 간의 중복과 혼란의 문제와 새로운 폭력 유형으로 나타나는 사각지대 확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과 법의 형식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여 제안하였다.

- 젠더에 대한 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임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폭력의 내용과 신종 유형의 내용을 포괄한다. 또한 기본계획 안에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젠더폭력 방지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젠더폭력에 관한 별도의 추진체계의 설치를 제안한다. 다만 향후 기존의 양성평등기본계획과의 중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 시 실행력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해서 현재 각 개별법마다 다른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통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각 개별법의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기존 개별법의 폭력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젠더폭력 통계의 수집과 산출, 공유, 체계적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데이터생산, 통계모니터링, 추적조사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의 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외 실태조사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향후 실태조사 기획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차 피해방지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조항에 명시하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지원시설 운영과 지원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국제공조 및 협력과 위해 표준화된 국제통계자료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8
가. 연구내용	8
나. 연구방법	8
3.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1
II.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31
1. 유럽	15
2. 미국	19
3. 영국	21
4. 호주	24
5. 스웨덴	26
III.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	92
1. 용어와 표현의 문제	31
2. 법의 형식에 대한 검토	37
3. 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	47
4. 개별조항의 내용과 구성	49
가. 기본계획	49
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50
다.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	53
라. 예방교육	54
마. 자료생산·실태조사 및 국제공조	55
바.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	57

IV.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방향	6
1. 법안 도출의 방향성	63
2.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할 경우	65
가. 법률의 목적과 기본 이념	65
나. 정의	67
다. 국가 등의 책무	68
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68
마.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	71
바. 전담기구	73
사. 기본시책	73
아. 예방교육	74
자. 기타	77
3.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경우	79
가.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79
나. 정의	79
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80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1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81
바. 기본계획·평가 모니터링	81
사. 추진체계	83
아. 기본시책	84
자. 전담기구설치 및 지원	86
차. 국제공조 및 협력	87
카. 예방교육	87
타. 자료생산	87
■ 참고문헌	89
■ 부 록	91
■ Abstract	189

표 목 차

<표 I-1> 간담회 및 포럼 추진경과 및 참석자	8
<표 III-1> ‘젠더폭력’과 ‘여성폭력’ 표현의 해외사례	33
<표 III-2>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 예	38
<표 III-3> 기본법 개념의 구분과 특징	39
<표 II-4> 현재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하는 방안	42
<표 II-5>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44
<표 III-6> 젠더폭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45
<표 III-7>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검토 법 조항	46
<표 III-8> 기본계획에 대한 쟁점사항	50
<표 III-9>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조항에 관한 쟁점사항	51
<표 III-10>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쟁점사항	53
<표 III-11> 예방교육에 대한 쟁점사항	54
<표 III-12> 자료생산 및 국제공조에 대한 쟁점사항	56
<표 III-13>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 설치에 대한 쟁점사항	59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젠더폭력에 대한 법제정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여성인권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서 젠더폭력을 정의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부터이다. 1979년에 제정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철폐선언(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1993년 UN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선포되면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란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선언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 선언 자체가 지닌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었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전세계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도덕적인 합의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다. 선언 채택 후 UN 및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¹⁾ 그러나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UN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1997년 12월 12일 UN 총회를 통해 회원국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국내 형사법적 조치와 관련된 입법, 법원칙, 절차, 정책 및 실무 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며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의 접근을 위해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범죄예방과 형사법적 조치를 통합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범죄예방과 형사법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전략모델과 실천방안(Model Strategies and Practical Measures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1) 1995년 제4차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996.12), 1997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97.4), 인구와 개발 국제회의에서 제출된 행동강령들,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젠더 평등, 개발, 평화”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유엔 총회 제23차 특별세션, 제40회 및 제54회 여성지위 위원회에서 채택된 선언들 등 참조.

4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and Criminal Justice)”을 결의하였다.²⁾ 이후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2008년 4월 18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에 UN 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공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젠더 범죄의 지속적인 진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1997년 결의된 전략모델과 실천방안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요구하였으며,³⁾ 이에 전략모델과 실천방안은 2010년 12월 21일 수정되었다.⁴⁾

2002년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란디카 코마가스위미(Radhika Coomaraswamy)는 국제적인 인권논쟁에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문화적 관행은 향후 10년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2006년 UN총회에서는 전세계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여성폭력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정부와 국제적인 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보고하였다. UN의 협약은 개별국가의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는 선언적인 것이지만, 폭력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어 2014년에는 UNODC의 “여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지침서(Handbook on effective prosecution responses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가 발간되었다. 이를 통해 UN은 성폭력 수사시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여 진행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복지관점에서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관점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여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성별간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다.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젠더폭력’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같은 포괄적인 정의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2) G.A. Res. 52/86, U.N. GAOR, 52nd sess., Agenda Item 103, U.N. Doc. A/RES/52/86 (1997); Model Strategies and Practical Measures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U.N. GAOR, 70th plen. mtg., Annex.

3)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8, Supplement No. 10 (E/2008/30), chap. I, sect. D.

4) G.A. Res. 65/228, U.N. GAOR, 65th sess., Agenda Item 105, U.N. Doc. A/RES/65/228 (2011).

여성폭력 범주를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의 ‘폭력’이라는 용어속에서는 ‘인권’, ‘존엄’ 등의 함축적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이라는 성별(gender) 위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려는 것이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개념을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젠더 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별 위계라는 폭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담은 개념으로, 국제법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인, 아동 등 성별이 아닌 사회의 위계적 구조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과 상호 중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국제법상으로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이란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젠더폭력 개념이 CEDAW상 성차별의 한 형태로 포섭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은 젠더폭력(혹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성평등의 실현과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실행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적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법체계의 성인지성을 함양하고 성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사회의 경우 2017년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젠더폭력방지법」(가칭)의 제정이 주요 과제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별도의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첫 번째 현재 폭력 가해자를 ‘문제적 개인’으로 인식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이중적인 분리구도로 접근하는 기존의 4대약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실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보다 구조적인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구조와 성별 간의 권력 불평등에 대한 성별화된(gendered) 인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깔려 있기도 하다.

6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한 세번째 이유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에서 발생한 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현재와 같이 복지관점에 입각해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체제로 추진체계가 존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과 젠더관점에서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독자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률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식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지만 온라인 혹은 디지털 성폭력방지법과 같이 개별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법률 간의 중복과 혼란을 해결하기 어렵고, 여전히 개별법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남는다. 만일 기본법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상위법이 제정된다면 여성폭력 범주(스토킹, 성희롱 등)에 대해서 기본법 내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개별법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중복내용은 기본법으로 가져오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은 기존의 폭력관련 개별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과 연동하여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의 목적 및 정의, 국가 등의 책무, 관련 기관 설치 및 지원, 피해자지원, 가해자처벌 등은 각 법에 그대로 두어도, 실태조사, 예방교육, 홍보, 폭력추방주간에 관한 내용은 서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의 제정 시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폭력예방교육, 실태조사, 폭력예방 홍보, 폭력 추방주간 등을 포함한 비슷한 서비스 관련 규정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기존 개별법의 해체 및 재정비에 기반한 통합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상위기본법으로서 제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이 제정되는 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기존 개별법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기본법의 법률 중에서 모순되는 조항이나 중첩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연동해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본법 제정 시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전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정책대응팀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구상하였으나 운영위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주요한 이유가 이러한 문제 때문이었다.

기본법 제정 시 현재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현장체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제도화 될 우려도 있다. 현장에서는 기본법보다는 지원 및 처벌 체계를 정리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법은 기존의 개별법의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기본법의 특성상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만 한정되는 성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목적조항 등 개별적인 문제를 담아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만일 성평등의 달성과 성차별구조의 철폐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젠더폭력 또는 여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강화시키는 방안과 「양성평등기본법」과는 별도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되, 법의 목적이나 이념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젠더폭력이란 개념 자체가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지 형사처벌을 위한 행위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 논의된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은 향후 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체계 및 조직 등 제도의 구성과 의식고양 캠페인 및 교육, 훈련 등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의 정책적 방향을 형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젠더폭력 방지 관련 입법 현황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해외 입법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위해 법 형식 및 기존 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 법제화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정리, 젠더폭력 등의 개념, 법체계 및 구성 내용, 제정(안) 마련 등을 함께 연구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현장단체 간담회, 전문가 정책자문회의 및 FGI(초점집단 인터뷰), 젠더폭력방지포럼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는 선행연구·해외 정책 및 입법례, 국내 젠더폭력 관련 정책 및 법제화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정부, 국회, 연구진, 전문가, 관련 현장단체 등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릴레이 간담회를 운영하여 현행 법·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후 전문가 정책자문회의와 FGI,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젠더폭력방지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여성학, 법학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젠더폭력 방지 법제화 방안 검토 및 법률안 정리하였다. 간담회와 포럼 일정 및 참석자와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표 I-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표 I-1> 간담회 및 포럼 추진경과 및 참석자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참석자
1차	법 제정에 대한 오픈된 형식의 현장단체 의견 수렴, 젠더폭력의 개념과 정의, 법안 주요사항 점검	2017. 5. 26. (금) 14:00~16:30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고미경 정춘속의원실 보좌관 한지성 정춘속의원실 정책비서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심의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강혜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민들레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황지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이미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국장 장유미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윤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여성가족부 관계자
2차	정의조항과 법안 주요사항 점검	2017. 6. 5. (월) 14:00~16:00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고미경 정춘숙의원실 보좌관 한지성 정춘숙의원실 정책비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윤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여성가족부 관계자
3차	개별조항의 내용 구성, 기본법으로서의 실효성 논의	2017. 6. 20. (화) 16:30~18:30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고미경 정춘숙의원실 보좌관 한지성 정춘숙의원실 정책비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여성가족부 관계자
4차	젠더폭력과 여성폭력 등 용어에 대한 논의, 목적·정의·기본시책 등 조항의 세부내용 논의	2017. 7. 12. (수) 16:00~18:30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고미경 정춘숙의원실 보좌관 한지성 정춘숙의원실 정책비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윤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여성가족부 관계자
5차	「양성평등기본법」 과 본 법안의 비교, 기본법으로서의 법안의 내용과 함의, 정의조항의 세부적인 표현 보완	2017. 8. 28. (월) 15:00~17:00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고미경 정춘숙의원실 보좌관 한지성 정춘숙의원실 정책비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최윤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남궁아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인턴 여성가족부 관계자
6차	용어정의와 표현· 법률안의 구성을 법률가, 여성학자와 함께 논의	2017. 9. 29. (금) 15:00~18: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조숙현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0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천재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상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임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남궁아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인턴 여성가족부 관계자
7차	법안 주요사항 점검, 추진체계의 기능 및 역할 논의	2017. 10. 18. (수) 14:00~16: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임대표 노현진 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소숙희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 서울권역대표 정미래 상매대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재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상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남궁아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인턴 여성가족부 관계자
8차	법안 주요사항 점검, 추진체계의 기능 및 역할 논의	2017. 10. 20. (금) 14:00~16: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이정미 여성지원시설협의회 회장 곽 금 한국여성긴급전화1366전국협의회 부회장 고명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노정민 전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 김남희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남궁아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인턴
9차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2017. 11. 01. (수) 16:00~17: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전혜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제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남궁아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인턴 여성가족부 관계자

3.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이번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개별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이 지닌 문제점과 법률 간 중복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고려해야할 점과 문제점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활동은 예산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확보가 용이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이 대책 차원으로 예산이 산발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독자적인 기존법이 제정되면 독립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계 생산도 필요하다. 젠더폭력에 관한 독자적인 시스템 설치와 유의미한 정책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구축하며, 신종 성범죄 등 현재 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포괄하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복지관점에 입각해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체제로 추진체계가 존재하기보다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그 취지에 입각한 젠더관점의 독립적·독자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젠더폭력과 관련된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국가행동계획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추진체계 또한 산발적으로 파편화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앙에만 추진체계가 있고 지자체에는 추진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실질적으로 예방교육 전담체계의 중앙과 지방 사이의 거버넌스 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젠더폭력이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체계 포함될 내용을 포괄하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의 보조금지원 방식보다는 독립적인 직영체제로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추진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추진체계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향후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젠더폭력과 관련된 기본계획,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데 있어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1. 유럽
2. 미국
3. 영국
4. 호주
5. 스웨덴

1. 유럽⁵⁾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과 관련한 대표적인 해외 법률사례로는 유럽평의회(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약’이 있다. 본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 그 밖의 서명국들이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모든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을 명기하고 있다.

본 협약의 체계는 총 12개의 장(Chapter)과 총 81개의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 목적, 정의, 평등과 차별금지, 일반 의무」에는 제1조(정의), 제2조(범위), 제3조(정의), 제4조(기본권, 평등과 차별금지), 제5조(의무와 실사), 제6조(성인지 정책)까지가 포함된다. 「제1장」에서는 본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목적과 정의, 협약의 범위, 기본권, 정부의 의무 및 관련 정책의 실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방지, 기소, 제거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와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의 증진 등을 본 협약의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는 앞선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젠더폭력”, “가정폭력”, “젠더”, “성에 기반한 젠더폭력”, “피해자”, “여성”이라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장 - 통합 정책 및 데이터 수집」은 제7조(일반정책), 제8조(재원), 제9조(NGO 및 시민사회), 제10조(조정기구), 제11조(데이터 수집 및 연구)까지를 포함한다. 「제2장」에서는 각 조항들을 통해 회원국들과 그 밖의 서명국들이 마련해야 하는 정책의 관련 내용, 입법적 조치, 행위자를 비롯하여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마련 등을 명기하고 있다. 나아가 관련 NGO 및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조정기구의 설립을 통해 정책 및 입법조치의 실행과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및 연구와 관련해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일정한

5)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2011.11.5.). CETS No.210.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210>

주기로 수집하고, 모든 범위의 폭력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관련 연구에는 일정한 주기로 조사하는 인구 기반 조사(population-based survey)가 포함된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국제 벤치마킹(international benchmarking)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공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 - 예방」에는 제12조(일반 의무), 제13조(인식 제고), 제14조(교육), 제15조(전문가 교육), 제16조(예방적 개입 및 치료 프로그램), 제17조(민간 및 언론의 참여)까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관련 조항들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비롯하여 성에 기반한 폭력, 남녀평등, 상호존중, 개인의 존엄성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실시함으로써 인식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혹은 가해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폭력 방지, 남녀평등, 2차 피해방지 등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예방 및 치료의 차원에서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여 민간 및 언론의 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제4장 - 보호 및 지원」은 제18조(일반 의무), 제19조(정보), 제20조(일반 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제28조(전문가에 의한 보고)까지 총 11개의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가 지원서비스(제22조), 보호소(제23조), 전화 핫라인(제24조), 아동 증인 보호 및 지원(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4장」은 각 조항들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일반 및 특별 지원서비스와 언어서비스 제공, 피해자의 개인적/집단적 불만제기를 위한 지원, 피해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보호소 제공,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신자 비공개 전화 핫라인의 전국적 설치,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증인의 격리를 위한 조치 및 아동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폭력 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혹은 당국에의 보고, 유관기관 혹은 당국에 대한 전문가 보고의 기밀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을 정하고 있다.

「제5장 - 실체법(Substantive law)」에는 제29조(민사소송 및 구제), 제30조

(보상), 제31조(양육권, 방문권 및 안전)에서부터 제48조(강제적 대체 분쟁 해결 혹은 양형의 금지)까지 총 20개의 관련 조항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제5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민사상의 구제 수단 및 보상을 위한 조치 마련, 아동의 양육권 및 방문권 결정, 강제 결혼의 무효화를 위한 조치 마련, 심리적 폭력 및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스토킹, 성희롱, 강제 결혼, 강제 낙태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치 마련, 관련 범죄의 원조 및 조장을 범죄로 확립하기 위한 조치 마련,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소위 ‘명예’에 의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마련, 폭력 행위와 관련된 형사범죄의 적용 및 관찰권, 제제 및 조치 등의 규정, 협약의 대상이 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한 중재 및 조정을 포함하여 강제적인 대체 분쟁 해결 절차의 금지, 벌금 납부가 명령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마련 등을 명기하고 있다.

「제6장 - 조사, 기소, 절차법(procedural law)과 보호 조치」에는 제49조(일반 의무), 제50조(즉각 대응, 예방 및 보호), 제51조(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제52조(비상사태 명령)를 비롯하여 제58조(제한 법령)까지 총 10개의 관련 조항들이 포함된다. 「제6장」은 협약의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조치 마련, 위협을 관리하고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마련, 상황의 심각성 및 반복되는 폭력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조치 마련,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촉 금지, 피해자 또는 위협에 처한 사람의 안전 우선을 위한 조치 마련,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제지 또는 보호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마련,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자 관련 증거의 수집을 허용하는 조치 마련, 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가 피해자가 제기한 보고 또는 불만에 전적으로 의존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 피해자가 진술이나 불만을 철회하더라도 관련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명기하고 있다.

「제7장 - 이주와 망명」은 제59조(거주 지위), 제60조(성에 기반한 망명 신청), 제61조(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를 포함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결혼 혹은 관계의 해소로 인한 피해 배우자나 피해 파트너의 거주 지위가 사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마련, 여성에 대한 성에 기반한 폭력이 박해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마련, 그러한 박해에 관한 성인지

적 해석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난민 지위의 부여 및 망명의 신청·절차에 필요한 조치 마련, 국제법상의 기존 의무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등에 관한 내용들을 각 조항들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 - 국제 협력」에는 제62조(일반 원칙), 제63조(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관한 조치), 제64조(정보), 제65조(데이터 보호)까지가 포함된다. 「제8장」은 각 조항들을 통해서 협력에 관한 관련 국제 및 지역 협약의 적용을 통한 균등하거나 혹은 상호적인 입법 및 내부 규정이 최대한 넓은 범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마련, 일방 당사국은 처분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폭력 행위에 따른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위해 해당 정보를 보유한 당사국이 관련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마련, 폭력 행위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의 당사국들 간의 정보 요청 및 제공, 개인정보자동처리(ETS No. 108)에 따른 개인의 보호를 위한 개인 데이터의 저장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장 - 모니터링 기구」는 제66조(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가 그룹), 제67조(당사국 위원회), 제68조(절차), 제69조(일반 권고사항), 제70조(모니터링에 대한 의회의 개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통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당사국 위원회에 대한 규정, 전문가 그룹의 모니터링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 전문가 그룹에 의한 협약 이행에 관한 일반 권고의 채택, 각 당사국 의회의 협약 이행을 위한 감시 조치에 대한 참여 등을 관련 조항들에서 명기하고 있다.

「제10장 -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는 제71조(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가 포함된다. 「제10장」에서는 다른 국제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본 협약 사이의 영향 관계, 당사국이 본 협약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한 자국의 규정을 보완 혹은 강화하거나 협약의 적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의 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장 - 협약의 개정」은 제72조(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해 명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2장 - 최종 조항」은 제73조(효과), 제74조(분쟁 해결), 제75조(서명 및 발효), 제76조(가입), 제77조(영토 적용), 제78조(유보), 제79조(유보의

유효성 및 검토), 제80조(폐기), 제81조(고지)까지 총 9개의 관련 조항들을 포함한다. 「제12장」에서는 관련 조항들을 통해 본 협약의 효과와 관련하여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해 보다 유리한 내부 법률이나 구속력 있는 기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협약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비회원국의 가입 및 서명을 위한 협약의 개방, 비준, 승인 등에 대한 규정, 협약이 적용될 영토에 관한 규정, 협약의 유보와 관련된 규정, 협약의 폐기에 관한 규정, 관련 당사국들에 대한 협약과 관련된 사항의 고지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2. 미국⁶⁾

미국은 1994년도 「폭력범죄 억제와 시행법(Violence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의 일부로 「여성폭력방지법(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였다. 여성폭력방지 법안은 여성을 향한 폭력을 폭 넓은 영역에서 다루었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연방법률로 정식 채택된 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후발 국가들의 「여성폭력방지법」 제정과 국제적 법률인 ‘국제여성폭력방지법(IVAWA,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여성 지위 향상에 영향력을 끼친 법률이다. 미국 「여성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등의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 형사상 전략을 재정비 및 법적 구제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법 집행 부서, 검찰과 법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이 법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검찰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이 있으며 경찰·검찰 등의 의무체포, 의무기소 정책을 장려하는 교육프로그램,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와 보호제도, 여성폭력에 관한 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

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가족부(2013) p 9-13 내용을 요약·정리함

다. 2000년의 법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을 강화하였으며, 주경계선을 넘어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험한 재판관할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편 여성을 위한 안전거리」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연방정부의 성범죄 처벌(CHAPTER1-FEDERAL PENALTIES FOR SEX CRIMES), 제2장 법 집행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기소 보조금(CHAPTER 2-LAW ENFORCEMENT AND PROSECUTION GRANTS TO REDUCE VIOLENT CRIMES AGAINST WOMEN), 제3장 공공 교통 시설 및 공원에서의 여성 안전(CHAPTER 3-SAFETY FOR WOMEN IN PUBLIC TRANSIT AND PUBLIC PARKS), 제4장 신 증거 규칙 (CHAPTER 4-NEW EVIDENTIARY RULES), 제5장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CHAPTER 5-ASSISTANCE TO VICTIMS OF SEXUAL ASSAULT)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안전문제 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편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은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제1장 국립 가정폭력 상담전화(CHAPTER 1-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제2장 주간의 법률 시행(CHAPTER 2-INTERSTATE ENFORCEMENT), 제3장 가정폭력 사건의 체포 정책(CHAPTER 3-ARREST POLICIES IN DOMESTIC VIOLENCE CASES), 제4장 쉼터 지원금(CHAPTER 4-SHELTER GRANTS), 제5장 청소년 교육(CHAPTER 5-YOUTH EDUCATION), 제6장 가정 폭력에 관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 (CHAPTER 6-COMMUNITY PROGRAMS ON DOMESTIC VIOLENCE 제7장 가정 폭력 예방 및 서비스 법 개정안(CHAPTER 7-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 AMENDMENTS), 제8장 학대 피해자를 위한 기밀 유지(CHAPTER 8-CONFIDENTIALITY FOR ABUSED PERSONS), 제9장 데이터 구축 및 연구(CHAPTER 9-DATA AND RESEARCH), 제10장 지방의 폭력 및 아동 학대에 관한 법률 시행 (CHAPTER 10-RURAL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ENFORCEMENT), 제11장 지역 주택 교부금 보조금, 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주택 보조금과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관한 연구(CHAPTER 11-TRANSITIONAL HOUSING ASSISTANCE GRANT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SEXUAL ASSAULT, OR STALKING, CHAPTER 11-RESEARCH ON EFFECTIVE INTERVENTIONS TO ADDRESS VIOLENCE AGAINST WOMEN)가 있다. 2편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가정폭력’을 배우자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 동거자에 의한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을 낭만적 혹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데이트 파트너(dating partner)에 의한 폭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편 여성의 민사상 권리」는 헌법 개정안 제14조 제5항과(section 5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제1조 제8항(section 8 of Article I of the Constitution)에 따라 제3편은 의회의 권한으로 성에 의해 유발 된 폭력의 희생자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공공의 안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편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재판」은 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주 법원 판사와 사법부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트레이닝(CHAPTER 1-EDUCATION AND TRAINING FOR JUDGES AND COURT PERSONNEL IN STATE COURTS), 제2장 연방 법원 판사와 사법부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트레이닝(CHAPTER 2-EDUCATION AND TRAINING FOR JUDGES AND COURT PERSONNEL IN FEDERAL COUR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5편 관계법 개정안」, 「제6편 전국적인 스토키와 가정폭력의 감소」, 「제7편 매 맞는 이민여성과 아동보호」가 있다.

3. 영국⁷⁾

영국은 「가족법」의 개정(Family Law Act 1996)과 「괴롭힘 방지법

7) 윤덕경 외(2015) p135-143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가족부(2013) p37-42 내용을 요약·정리함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제정을 통해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 7월 4일 가족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사상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법률위원회는 복잡한 법체계와 서로 다른 관할권으로 나타나는 공백을 제거하고, 가능한 모든 보호를 제공하며, 성인들 사이의 적대감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법을 통해 가해자를 격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2004년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상 범죄(criminal offence)로 여겨, 경찰은 즉각적인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7년 3월 21일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4월 8일 「괴롭힘 방지규정(Protection from Harassment (Northern Ireland) Order 1997)」을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가정폭력, 범죄와 피해자 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이 제정되어 여성폭력과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하였다. 이 법은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과 일반범죄에 관한 일부의 내용,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실무지침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가정폭력’의 정의는 2012년 3월 8일 개정된 이후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가정폭력 범죄행위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해악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법의 개정 이후 영국의 가정폭력은 보다 넓은 범위의 가해행위를 포섭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범위도 넓어졌다.

영국의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실행되는 제도로 긴급전화 999가 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폭력관련 응급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보호통지·명령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과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정부 주도로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지역 연대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프로그

램운영에 대표적인 사례지역이다.⁸⁾ 크게는 공동체안전파트너십(community safety partnership)을 통한 범죄예방과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그리고 “평등한 안전(Equally Safe)”의 정책을 통해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 중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950년대 지방경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 치안(Community Policing) 조직을 운영하여 공동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안전을 강화하는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과 지역 내 공동체 구성원, 지역단위의 각 주체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80년대 초반부터 경찰과 지역범죄 예방패널을 중심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회적 환경 개선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다가 1988년 new life urban scotland 정책이 시행된 이후 더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Safer cities project)가 등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예방보다 공동체 안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운영된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더 안전한 도시프로젝트가 결합되었고,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협의회(The Convention of Scottish Local Authorities, 이하 COSLA)가 이를 더욱 정교화 하였다. 1998년 스코틀랜드 행정부와 COSLA, 경찰총장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행동 전략” 문서 발표하고, 이후 지방정부 지역사회 안전포럼은 지원과 효과적인 실천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실무자의 비공식 네트워크로 형성된다. 1999년 스코틀랜드 정부는 “더 안전한 스코틀랜드(A Safer Scotland)” 지침을 통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자세히 나타내고 공공의 신뢰 구축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community safety partnership, 이후 CSP)의 세부지침을 제안하게 되며 이는 2003년 지방정부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 2005년 각 지자체 내의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의 네트워크인 SCSN(Scottish Community Safety Network)이 형성되어 관련 실무자들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예로 던디시의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의 경우 공동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인과 가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고와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협박, 괴롭힘의 가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8) 이하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례는 형사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2017)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를 지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취약그룹인 아동과 노인, 범죄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착취와 성매매, 혐오범죄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4년부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전략으로 “평등한 안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젠더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한 결과였다. 또한 COSLA와 협력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때 평등한 안전정책이란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여성과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남용에서 벗어난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공공영역, 사적영역, 제3섹터가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협업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 근절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추진되는 정책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스코틀랜드 사회는 평등과 상호존중을 받아들이며, 모든 형태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거부한다. ② 여성과 소녀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다. ③ 여성폭력에 대한 개입은 조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폭력을 예방하며, 여성과 소녀의 안전과 복지를 최대화한다. ④ 남성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며, 여성폭력 가해자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받게 된다.

또한 스코틀랜드는 2013년 불이익과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등법을 마련하여 관련 법률을 통합하였다. 나이, 장애, 성별정정, 결혼 및 동반자법,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 및 신념, 성별, 성적취향으로 구분된 기존의 9개 영역이 통합된 것이다.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평등의 의무가 규정되고, 대학 역시 주요한 영역으로 평등의무 주류화(mainstreaming)에 관한 보고, 평등 결과 및 성과발표, 성별임금 격차 정보 게시 등의 특정한 의무를 지니며 의무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

4. 호주⁹⁾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을 경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가족부(2013) p63-69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협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법의 주요 목표는 신체 및 정신적 상해, 방임, 학대 등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해 법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 아동을 위해 최선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주별로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형법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범죄법(Crimes(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보호와 안전, 가정 내 폭력 방지와 감소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선언(Decele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과 유엔아동권리보호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규정 이행에 대한 내용을 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퀸즈랜드주의 「가정 및 가족폭력 보호법(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역사회의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을 확장하여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 통제하거나 힘을 가하는 행동을 가정폭력 행위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관계 유형을 규정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s), 비공식적인 돌봄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친밀한 관계란 이성 또는 동성커플의 약혼, 사실혼 관계, 별거, 이혼,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경우, 동거, 커플이지만 따로 사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가정폭력법(Domestic Violence Act 1994)」에 근거하여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테즈메이니아주는 「가정폭력법(Family Violence Act 2004)」을 통해 법원은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경찰은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가정폭력보호법(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을 통해서 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을 인권 침해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방지명령(Restraining Orders Act, 1997)과 방지명령규정(Restraining Orders Regulations, 1997)에 근거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감소 국가계획 2010-2022(The National Plan to Reduce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2010 - 2022)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성인권의 신장과 성평등 조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사법체계 안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폭력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여성과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재단(Founda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이 2013년 출범하여 폭력을 가져오는 문화와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전국적 차원에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지활동을 수행 중이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두 가지 유형의 사회서비스(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위기급여(Crisis Payment)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화재 등 극도의 상황에서 살던 집을 떠나야 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특별급여(Special Benefit)의 경우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어지는 일시적인 급여이다. 그 밖에 위기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간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살인방지 모니터링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운영 중이다.

5. 스웨덴¹⁰⁾

스웨덴 형법은 1962년 채택되어 196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형법전(Penal Code)은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형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형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조항들은 특별법(special legisl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형법전은 모든 범죄에 대한 조항과 범죄에 대한 제재 그리고 법의 적용 등의 일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노먼 비숍(Norman Bishop)에 의해 처음 형법을 영어로 번역 한 이후 1996년 입법 개정안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추가 조항을 포함한 번역본은 이전 번역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및 1999년 5월 1일까지 형법 개정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포

10) 스웨덴 형법전(Penal Code) 영어 번역본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함.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judicial-system/the-swedish-penal-code/> (검색일: 2017.10.30.)

함한 버전에서는 형법 개정안으로 채택된 법률에 대해 괄호로 묶고 해당 법의 참조 번호를 표기해 놓았다. 스웨덴 형법전의 특정 부분은 성 중립적 용어로 쓰여졌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남성적 성별 용어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남성성을 띄는 성 용어가 쓰였더라도 이는 여성 까지 확장 시킬 수 있다고 형법전 서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쓰인 용어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성 중립을 확장하려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웨덴 형법전은 총 3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6장 성범죄」에서 13개의 절(section)에 걸쳐 주요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관련 범죄들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절에서 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관련되거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혹은 위협당한 사람이 느낄 때 급박한 위험상황을 일으키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성범죄 위반의 성격과 상황판단 하에 강제 성행위에 준하여 최소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성교 행위는 최소한 강간죄로 형을 선고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력감이나 이에 상응하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는 폭력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넓게 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폭력 행위의 위협 정도나 본질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황판단 하에 심각하지 않은 폭력 범죄로 간주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부과되지만, 범죄가 중한 경우 최소 4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범죄 인지 혹은 경범죄 인지에 대하여 폭력범죄를 판단 할 시에 범죄가 피해자의 전반적인 삶에 위협을 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특별한 상황판단이 고려되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상황판단이란 해당 폭력행위가 피해자의 삶에 위협을 초래했는가 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 또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켰는가, 폭력 피해를 가할 때 사용 된 방법에서 특별히 잔인함이나 잔인성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성적착취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폭력 행위자의 종속 주(state)에서 정의하는 성적착취(sexual exploitation) 행위로 판단될 시에 행위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무력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다른 정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행위를 한 가해자에게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덧붙여 피고인이 특정 무자비함을 드러내는 범죄의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최대 6년이 성적 착취의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절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사람, 자녀 혹은 자신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거나 피해자의 공적인 결정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과 성적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 성적착취(sexual exploitation of a minor)범죄에 대한 처벌로 최대 4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 언급 한 형태의 가해자가 15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같은 형법이 적용된다. 그 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제7절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전에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규정 된 바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1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 접촉을 하거나 또는 성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성추행에 대한 형벌은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불법음란물 제작을 하도록 유혹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제8절에서 불법 성매매를 자행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최대 4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

1. 용어와 표현의 문제
2. 법의 형식에 대한 검토
3. 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
4. 개별조항의 내용과 구성

3장에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젠더폭력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령의 표현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법의 형식이 갖는 함의와 그에 따른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법의 실효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전문가와 현장 단체의 의견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세부 법안의 내용과 개별조항의 구성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

1. 용어와 표현의 문제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있어 가장 큰 쟁점사항은 법 자체를 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젠더라는 표현 자체가 지닌 모호함과 그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진행된 전문가와 관련 현장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매번 빠지지 않고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젠더’라는 표현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성폭력 대신 젠더폭력이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문제는 기존의 여성폭력관련 개별법의 규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젠더(gender)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성(sex)과는 구분되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gender’와 ‘sex’를 통상적으로 ‘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¹¹⁾ 1995년 9월 5일 북경 제 4차 여성 대회를 통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젠더라는 표현은 사회학적 인식에 대한 성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포털사이트 내 백과사전에서도 젠더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사회적,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이며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통칭한다.”고 정의하며, 유럽연합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젠더라는 표현을 “남녀차별적인 섹스보다 대등한 남녀 간의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11) 국립국어원에서는 제10차 회의(1996.3.22.)를 통해 gender를 “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고,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섹스’ 대신 바뀌 쓰기로 결정함바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¹²⁾

따라서 젠더의 개념 안에 내포된 성 역할은 신체적인 성(sex)과 달리 문화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린 시절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 역할을 배우고 이것은 교육과 미디어, 가족, 종교, 공공정책과 다른 사회 기구를 통해 계속해서 강화되기 때문이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7).

국제사회에서는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 이 용어가 등장하였다. 젠더 폭력(gender based violence 혹은 gender violence)은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혹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남성성·여성성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인지한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 한 개인을 겨냥하는 폭력으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 협박, 강압, 자유의 임의적 박탈과 경제적 박탈을 포함하는 것”으로(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7) 정의할 수 있다. 젠더폭력의 유형은 크게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행위(성폭력, 성적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 성희롱),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가정폭력, 성기절단(할례), 지참금 살인, 명예범죄, 여성혐오범죄), 집단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전쟁무기로서의 강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양희, 2013: 4).

통상적으로 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과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표현은 사용할 때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젠더폭력의 원인이 사회에서 부여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성역할에 기인하지만, 폭력의 주된 대상이 보통 여성과 소녀들이고 이들이 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7; 김양희, 2013: 1). 젠더폭력과 여성폭력 중 어느 용어를 사용하느냐는 <표 III-1>과 같이 국가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굳이 구분하자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젠더폭력은 생물학적 성에 기인한 것인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아와 여성, 남아와 남성, 다양한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는 등 전자보다 그 대상이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김양희, 2013: 7).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젠더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도 그 주된 피해자가 여

12) 문학비평용어사전. “젠더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865&cid=41799&categoryId=41800>
(검색일: 2017.11.25.)

아와 여성이지만, 남자와 남성 역시 젠더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양자를 혼용하거나 성에 기반 한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¹³⁾. 이처럼 양자 간의 표현은 국가 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III-1> ‘젠더폭력’과 ‘여성폭력’ 표현의 해외사례

구분	사용국가	특성	출처
젠더 폭력	Gender based violence 란 말을 쓰기는 하지만 생물학적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실제 내용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혼용하여 사용	-	* EU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3) * 스코틀랜드 Equally Safe: Scotland’s strategy for preventing and eradic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The Scottish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www.gov.scot/Publications/2016/03/7926/0 .
	Gender based violence	실제는 domestic violence에 초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사용
여성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Civil law protection under the Act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	독일
	GENERAL ACT OF ACCESSION OF WOMEN TO A LIFE FREE OF VIOLENCE CHARM OF	-	멕시코

13)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SGBV)으로 표현하고 ‘성에 기반 한 폭력’으로 번역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http://www.unhcr.org/sexual-and-gender-based-violence.html>

검색일: 2017.11.30.; 유엔난민기구 한국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unhcr_korea/220953699808 검색일: 2017.11.30.)

구분	사용국가	특성	출처
	DEVELOPMENTS OF THE HEALTH CONGRESS		
	Law on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EVAW)	-	아프가니스탄
	AN ACT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PROVIDING FO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E, AND FOR OTHER PURPOSES. "Anti-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of 2004."	-	필리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에 있어서 주된 쟁점인 법의 명칭은 이러한 용어의 개념과 그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단일하게 번역하는 sex와 gender의 개념이 차이가 있고, 세대별 그리고 개인별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념의 이해와 수용가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정의 주된 필요성과 목적과는 상이하게, 개인과 특정 집단의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젠더폭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우려의 시각을 보이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폭력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¹⁴⁾ 여성폭력이라고 못 박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여성대상 폭력으로 고착화하고 양성중 하나의 성만 피해자로 본다는 점에서 비중립적인 용어 혹은 양성평등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다. 반면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 주된 피해자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메커니즘이 성별 위계와 관련이 없을 경우 본 개념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춰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률제정 시 법의 명칭으로 ‘젠더폭력’을 사용할 경우

14)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친숙하지 않은 외국어로 된 법명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법명에 영문명칭이 들어간 것은 피하고 있다. 영문명이 법률화된 사례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도를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의 대안적 용어로 ‘여성폭력’을 법명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이하 VAWA)의 제정 이후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를 크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은 1994년 제정된 이후 모든 폭력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2000년과 2005년 국회의 재승인을 얻은 뒤 2013년 제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대상과 내용이 확장되었다. 2013년 확대된 「여성폭력방지법」의 피해자의 대상이 원주민 여성, 이민자, 대학생 및 청소년, 공영주택 주거인 등으로 확대 되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대한 피해를 포함되도록 했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폭력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⁵⁾ 따라서 법명은 「여성폭력방지법」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그 대상이 확장되었으므로 ‘폭력 및 학대피해자보호’의 의미로 포괄하여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사례는 실제 법률의 명칭과 그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지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폭력’ 표현을 유지해야 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용어를 통해 우리사회 내 여성폭력이 여성의 차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으며, 향후 반폭력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성폭력이 단순히 생물학적 성(sex)에 근거한 폭력을 넘어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의 형태를 보이며 그 안에서 나타난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폭력을 영속화시키기 때문이다(Manjoo, 2011; 김양희, 2013 재인용).

또한 ‘젠더폭력’보다 입법적 전략상의 이유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반발의 우려가 있고, ‘여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기본법의 내용을 축소하여 이해할 소지가 있다.

1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개관”.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US/report/31941?astSeq=316>

(검색일: 2017.11.27.)

피해자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 하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표현을 ‘여성폭력’으로 한정할 경우 현장의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¹⁶⁾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부여 된 성역할을 기반으로 한 폭력의 양상을 보이며 폭력의 대상은 주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 통제, 억압,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김양희, 2013). 또한 기존의 가정폭력이 상당부분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해당 법이 기본법으로서 폭력을 다루는 상위법이 될 경우 여성폭력으로 명시적으로 한정된다면 가정 내 아동과 노인학대 등의 피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이유에서 표면적으로는 개인 간의 혹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 내면에서는 사회 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와 제도적, 구조적 차별 하에서 여성폭력으로 지속되며, 가부장적인 사회 통념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이것을 정당화 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김양희, 2013)의 철폐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라는 표현은 현재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외래어이자 일상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세대별 용어의 친숙함이나 개념에 대한 수용정도는 다를 것이다. 예컨대 1995년 9월 5일 북경 제 4차 여성 대회이후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되어 온 용어는 대체로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친숙한 편이며, 그 개념과 함께 기존의 성차별과 성희롱 같은 문제에도 이전세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와 같은 일선 현장에서는 법률명칭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¹⁸⁾ 법령의 명칭과 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할 때, ‘여성폭력’을 범명으로 한다면 그 취지에서 부터 기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의 폭력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이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쉽게 이해 하

16)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17) 따라서 기본법으로서의 본 의미와 필요성을 생각할 때 ‘젠더폭력’이나 ‘성별화된 폭력’, ‘성차별에 기반한(근거한) 폭력’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개념의 정의를 통해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여성(젠더)폭력의 피해자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의전화).

18) 전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지만, 관심이 적은 학생은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여성폭력의 이슈를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성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여성폭력’의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할 경우 일부학생, 특히 남학생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법제정시 법령의 명칭과 그에 따른 함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학교 내 교육의 현장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젠더폭력이란 표현에 대한 수용성은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혹은 세대와 성인지적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법의 형식에 대한 검토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의 양상을 볼 때 기존의 여성에 대한 폭력 유형에서는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기존의 개별법으로 다룰 수 없는 폭력의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간의 중복으로 나타나는 혼란과 비합리적인 문제를 일관된 체계 속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와 기존의 현장단체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법제정의 전략상 법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견과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젠더폭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일반법 형태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⁹⁾ 우리가 보통법이라고도 부르는 일반법은 특별법에 비해 넓은 범위의 사람과 장소·사항에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이보다 좁은 범위의 사람과 장소·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표 III-2> 참조),²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의 형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19)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대적인 개념임을 고려한다면 법무부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일반법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0)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483&cid=58765&categoryId=58768>

(검색일: 2017.11.29.)

<표 III-2>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 예

구분		일반법	특별법
적용범위		제한 없이 일반적 적용	특정한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
효력 및 적용 순서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적용	일반법과 같은 위계라면 특별법 우선적용
사람	대상	국민전체에 적용	소년(20세 미만)에 대한 형벌 및 이를 과하는 절차를 정한 법
	범명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특별법)
장소	범위	우리나라 전국에 적용	지방자치행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만 적용
	범명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항	범위	일상생활	상거래에 적용
	범명	민법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전체)	상법 (사람: 상인대상)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내용을 일부 보완함

따라서 법의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방향은 법의 형식은 일반법으로 하되, 이를 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개별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법의 내용 안에 처벌 규정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¹⁾

기본법은 그 의미상 <표 III-3>와 같이 3가지의 큰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박영도, 2005), 법제상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표현의 유무를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의제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러나 정책적으로 체계성을 모색하려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우기택, 2016).

21) 다만, 젠더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범죄 나열식’이 아닌 ‘범죄 성격 규정식’으로 한다면 처벌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감안할 때 어려울 수 있다.

<표 III-3> 기본법 개념의 구분과 특징

구분	내용과 특징
실질적인 의미의 기본법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것 뿐만 아니라(혹은 그와 관계없이) 각 법 분야에서 기본적인 원칙, 제도 등을 정한 일반법도 포함하는 의미로 광의의 의미라 볼 수 있음 예)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형법 등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	법령의 법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로 주로 국정의 중요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칭하는 법률
법규범상의 기본법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 헌법과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음 예) 독일의 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출처 : 박영도(2005) p 19. 내용을 정리함

기본법은 해당 분야에서 지도법 및 기준법으로서 각 개별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분야 및 사항의 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 인식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그 이념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우기택, 2016: 52, 46). 현재의 기본법은 일정한 법 분야나 정책의 분야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분야에서 복수의 기본법이 계층적으로 제정되기도 한다. 복수의 기본법 제정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한 분야의 경우 법률의 체계와 통일을 위해서는 분명 필요하다(우기택, 2016: 47).

젠더폭력에 관련한 각 개별법이 있으나 기본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이 “근원적으로 다원화된 가치 및 체계를 국가공동체 차원에서 조율하고, 일관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화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그 목적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우기택, 2016: 48). 따라서 기본법이 아닌 개별법 형태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다루는 일관된 체계를 마련하고, 보편적인 인권과 젠더 관점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법의 목적과 취지와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법 법제화를 위해 ‘조율’과 ‘통합’ 및 ‘체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 개인과 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존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당시 정부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일관적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이 한계가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둘러싼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도와 정책의 종합과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박영도, 2005).

젠더폭력, 여성폭력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개별법들을 살펴보면 여성폭력의 운동역사속에서 제정되어온 탓에 개념과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기본법 제정 시 성별위계에 대한 인식, 여성피해자에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대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곧 각 개별법과 관계된 추진단 체별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조율·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별법 안에서 중복된 내용의 통합과 함께 젠더폭력과 여성폭력의 국제법상 개념을 충실히 기본법 안에 반영하여 기존의 개별법 안에서의 부족했던 폭력에 대한 통합교육, 사법접근권과 관련된 훈련, 전문화(전담팀)의 포섭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폭력의 범주(스토킹, 성희롱 등)에 대해 국가의 의무로 “모든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형사처벌 할 수 있다”의 규정을 명시하는 등 기존의 개별법들의 한계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기본법 제정이 단순히 상징적인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닐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폭력에 관한 개별법과의 관계 설정 문제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성평등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처럼 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는 법 형식의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 내에 젠더폭력 개념과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UN과 EU등의 젠더폭력에 관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폭력의 원인의 상당부분이 성별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고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에서 젠더폭력과 성평등의 관계를 중복해서 다른 기본법을 통해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현재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중 젠더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을 기본 시책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을 경험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젠더폭력과 여성폭력의 개념을 법률명으로 포섭하여 법률제정을 하는 것은 성평등실현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목적을 지향하는 법률로 통합시켰다는 의의를 성취할 수 있다. 즉, 젠더폭력 또는 여성폭력이라는 국제법상 개념을 국내 법률명으로 하나의 기본법을 포섭하여 제정하였다는 법률제정의 의의를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양성평등이란 커다란 목표 속에 포섭되어 젠더폭력 방지라는 본래의 법제정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흡수 통합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젠더폭력 부분을 강화하려면 법명도 젠더폭력이 포함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통합시킬 경우, 현재 성희롱만 포괄된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성희롱이 성차별의 한 형태이나 이외의 다른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도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양성평등기본법」 내에서는 폭력의 특성과 피해자·가해자 관련 공통 요소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통합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갈 경우에도 성희롱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여성폭력 전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여성폭력을 다루는 정부의 계획과 감독, 형사사법체계 내 전담인력과 성인지 훈련 및 성주류화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하에 운영되는 기존의 정책추진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추진체계, 기본시책, 통계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여성폭력방지법」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4> 현재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하는 방안

구분	내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을 경험하지 않고 법률 제정 가능,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젠더폭력을 넣을 수 있음 ② 젠더폭력 또는 여성폭력이라는 국제법상 개념을 국내 법률명어로 포섭함으로써 앞서 언급하였던 법률제정의 의의를 성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상 젠더폭력 개념이 여성폭력철폐선언(CEDAW)상 성차별의 한 형태로 포섭 - UN이나 EU 등 여성폭력에 관련된 정책, 스코틀랜드 등 유럽 국가 내 여성폭력 예방근절정책은 여성 폭력의 원인인 성별 권력 불균형의 시정과 양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일차적 목표로 함 ③ 여성 폭력과 관련된 정부의 계획, 이에 대한 감독, 형사사법체계 내 전담인력과 이에 대한 성인지 훈련 및 성주류화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부분을 강화하려면 법명도 젠더폭력이 포함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가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과 중복되어 젠더폭력의 방지라는 법제정의 본래의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이 비록 성차별의 한 형태이나 폭력의 특성과 피해자·가해자 관련 요소들을 다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 내에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 ② 성희롱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여성폭력 전체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③ 「양성평등기본법」 내 정책추진체계(위원회, 기본계획, 전담기구), 기본시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추진체계, 기본시책, 통계생산의 근거를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입법사례에서도 「여성폭력방지법」 자체가 별도의 독립된 입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것임

둘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다른 법체계는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예컨대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젠더폭력의 경우 이러한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존의 관련법의 공통된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포함하지만 정책과 추진체계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별법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개별 폭력법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법 제정은 현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를 다루는 개별법의 공통사항을 포함하고 젠더폭력의 개념을 추가하여 현재 개별법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온라인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폭력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기본법 안에 포함되는 각 법안의 공통사항은 개별법 안에서는 삭제하고, 각 개별법 법안의 특수한 사항은 남겨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선 없이 통합된다면 젠더폭력의 개념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교적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법의 특성과 법의 위계를 생각 할 때 세부적인 논의를 법안에 세세하게 포함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개별법의 내용은 남겨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젠더폭력이나 여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포괄해서 규정하기는 힘든 경우처럼 피해자의 성격과 피해자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거인가도 개별 폭력의 유형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보다 상위의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개별법의 내용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에도 개별법도 문제이지만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선이 없이 단순히 별도의 기본법으로 제정된다면 젠더폭력에 대한 개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중 현재 법안에 포함된 성희롱에 대한 부분은 새로이 제정되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 국제법 및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과 배치되지 않는 일반적인 젠더폭력에 대한 개념에 입각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표 II-5>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구분	내 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다른 법 체계는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으나(「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젠더폭력의 경우는 이런 법체계가 없어 전체적, 거시적 차원의 그림이 필요함 ②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개별법의 공통사항을 기본법에 가져오고, 젠더폭력의 개념에 현행법에서 다루어 지지 않는 온라인 성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 중 공통사항은 삭제되고 특수한 사항만 남음 ③ 여성 폭력과 관련된 정부의 계획, 이에 대한 감독, 형사사법체계 내 전담인력과 이에 대한 성인지 훈련 및 성주류화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부분을 강화하려면 법 제목도 젠더폭력이 포함되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선없이 통합된다면 젠더폭력 개념 왜곡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 및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과 배치되는 개념 사용 ②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같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중 하나로 넣을 수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과 별도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 정책추진체계(위원회, 기본계획, 전담기구), 기본시책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함 ③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개별법을 따로 둘지 또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만 두고 3개의 개별법은 삭제할지 등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과 개별법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러한 법률안은 기존의 관련 규제와 보호제도의 변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젠더폭력 방지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현재 젠더폭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보호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의 경우 관련 법률이 없거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표 III-6> 젠더폭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구분	관련 법률 법안	내용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
	관련 법률	없음
데이트폭력	제19대 국회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918581)이 발의	임기만료폐기
	제20대 국회에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429)가 발의되었음(2017. 8. 8.)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
디지털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자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제2항, 제44조의7제1항,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동법시행령 제30조의3	몰래카메라 등의 사이버 성폭력물의 인터넷상 유포에 있어 현행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스토킹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구체적 행위규정, 처벌규정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규정	없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사위에 계류 중

구분	관련 법률 법안	내용
	법률안」(의안번호: 2002537)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108)	
	「스토킹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0102)	

출처: 조주은(2017). p 5.

앞서 살펴본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은 공통적으로 관련된 기존의 기본법 및 개별법 내용의 수정 혹은 삭제가 필요하며 기본법의 제정과 개별법의 개정은 가능한 시차를 줄여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향후 이의 일정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²⁾

<표 III-7>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검토 법 조항

구분	법 제정 시 검토 법 조항
기본시책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제4조의 5, 제4조의 7, 제8조의 5, 제9조,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9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 3,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제8조, 제9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3조, 제33조의 2, 제35조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실태조사	「양성평등기본법」 제 3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2)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3. 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제정은 앞서 논의 한바와 같이,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된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국민에게 법의 내용을 인식시키고 의식의 개혁이 추진되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박영도, 2005: 31). 그러나 단순히 ‘상징적인 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젠더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선언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데 그치지 않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잘못된 기본법은 제정만큼이나 기존의 개별법을 개정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현장단체의 대표와 회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초점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만 각각의 쟁점사항에 따라 이해관계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일관적으로 통일된 내용으로 정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와 관련 현장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각 단체별로 또한 단체 내의 구성원 간에도 이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조율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통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으나 각 조항이나 세부 내용 및 각론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²³⁾

먼저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을 구성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째, 폭력피해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자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다. 상위법으로서의 제정 목적을 살펴본다면 기존의 폭력피해자의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다 범위가 넓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가정폭력 처벌법에서의 피해자

23) 따라서 단체들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도록 각주 및 괄호로 표시하였다.

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가정폭력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법률 규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보다 나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속에서 다르게 규정되고 있거나 미처 포괄하지 못한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젠더폭력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에는 기존의 개별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 양상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²⁴⁾ 예컨대 성희롱과 스토킹, 성적 인신매매,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을 젠더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법안의 총칙에서 보다 명확한 폭력의 양태와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²⁵⁾ 특히 현재 성희롱 관련한 규정이 미약하고,²⁶⁾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²⁷⁾ 또한 법안에서 담아 낼 수 없는 새로운 폭력 유형과 양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폭력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법체계상 크게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과 가해자를 위한 처벌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담당하는 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안에 명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형법 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협의되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피해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률이 가지는 피해자 지원근거의 장점을 부각시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24) 젠더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범죄나열식과 조작적 정의를 통한 범죄 성격규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나열식에 따라 정의하면 범죄종류에 한정하여 젠더폭력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범죄규정식으로 할 경우 단순한 선언적 의미 이상의 실효성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26) 현재 성희롱 관련한 규정은 크게 「양성평등기본법」 30조, 31조, 32조(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이행점검, 성희롱실태조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13조의 2, 14조, 14조의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채팅 화면을 통해서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항이 정비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자활을 돕는 제정과 법률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고, 폭력 피해자들을 총괄하여 지원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에 폭력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구분하지 말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재원은 폭력피해자를 위해 통합적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3대 폭력과 통합교육으로 되어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다원화시키는 동시에 하나의 틀에서 체계화된 일원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일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으나, 각각의 폭력에 유형과 대상별 폭력발생을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재발방지 관련 프로그램 역시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폭력의 특성을 살리되, 예방교육과 더불어 모든 폭력에 공통이 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 관련 수사기관 담당자 교육이 명문화 같은 내용은 기본법에서 명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개별조항의 내용과 구성

지금까지 기본법 제정에 대한 개괄적인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법률 조항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전문가 및 관련 현장단체와 회의와 FGI 과정에서 법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세부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은 크게 기본계획과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재발방지, 예방교육, 자료생산, 추진체계 및 관련 기구 등에 관한 것이다.

가. 기본계획

여성폭력 혹은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계획 구성 시 젠더 관점을 반영하여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젠더폭력에 대한 단순 책무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연도별로 추진해야할 정책목표를 담은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수립할지의 여부

28) 한국여성민우회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충돌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방정부의 하부추진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조달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간담회 중 국가행동 계획 수립 시 법조문에서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강제성이 없는 법조문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실제로 법조항 구성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이 더 수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²⁹⁾

<표 III-8> 기본계획에 대한 쟁점사항

조 항	내 용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관점을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폭력피해 및 예방에 대해 단순 책무를 가지는 것을 넘어 지역단위의 지역 폭력계획을 수립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계획집행시 재원은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좋은지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 국가행동계획 수립 시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강제성을 동반한 명문화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이다(한국여성의전화).

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피해자 지원 및 기준에 대해서 현재의 개별법보다 상향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피해자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현행법 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활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³⁰⁾ 현재 피해자 지원이 상담소와 쉼터와 같이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시설 미입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매제시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준에 시설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되는 보다 통합적

29) 한국여성의전화

30)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노출의 위험으로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정부는 사회보장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시설수급, 비수급자로 나누어 의료서비스를 차등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부족한 쉼터의 경우 치료지원을 제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미경, 2017).

관점에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³¹⁾

법조항 구성 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폭력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지원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³²⁾ 실제로 실제현장에서 피해자 지원 시 강제성을 보다 명확하게 부여하는 조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세부화될 경우 그 경직성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업 시행에 적용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법안을 기본법으로 구성시 개별법에 있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확보를 위해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개별법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으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각 개별법을 통해서 보호시설 등이 운영되어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고 필연적으로 기존의 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을 공동규정으로 묶어 하나로 통합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III-9>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조항에 관한 쟁점사항

조항	내용
피해자 지원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개별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의료비 지원조항과 같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으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조항이 없는 경우가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따라서 명확한 지원에 대해서 조문 내 명시가 필요

31) 피해자의 대상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데 현재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이 정책대상에 제외되어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상황이다(허오영숙, 2017). 또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장애여성을 지원하는 시설과 상담소도 부족하다(배복주, 2017).

32) 예컨대, 제00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활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한다.

조항	내용
	<p>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젠더폭력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수준 및 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피해자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확대 (한국여성의전화) - 비입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상담소나 쉼터 등 시설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생계비와 의료비 확보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필요 (여성지원시설협의회) - 현재 각 개별법을 통해서 보호시설 등이 추진(운영)되면서 대상자에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이들을 통합했을 때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 같은 추진력과 힘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대상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음(서울가정폭력시설협의회) - 각 피해자의 지원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고, 기존 법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상황, 공동규정을 묶어 하나로 하는 어려움 - 청소년 대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해청소년들 상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 이주여성에 관한 내용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적이 없는 이주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이주여성인권센터)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조항에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한국여성의전화)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조항 내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한다’ 는 표현 고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p>예) 제0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항 안에 기존에 개별법 안에서 지원 불가능한 폭력피해자의 지원 내용을 포괄 할 수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개별법 안에서 지원 불가능한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을 포괄(1366 전국협의회) - 현재 가폭법 4조 6항에 묶여 1366 센터가 겪고 있는 피해자 지원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필요(1366 전국협의회) - 피해자 정보 보호에 대한 조항에서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닌 좀 더 강력한 표현과 체계 구축이 필요(한국여성의전화)

다.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

폭력행위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종 폭력의 심각성이 축소되거나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될 것인지 신뢰하지 못하고, 신분노출과 함께 피해자가 의심받는 2차 피해로 이어질까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게 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미경, 2017; 이미경, 2017).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문제 삼는 수사기관과 피고인 측 변호사의 인권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상 조치도 없다(이미경, 2017). 따라서 수사사법기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상의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기관 역할의 명시가 필요하며 젠더폭력 인식개선을 위해서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경우 사건을 흥미위주로 설명하여 보는 사람에게 호기심만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윤정주, 2017). 실제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사건 보도 151건 중 사건의 상세한 보도 및 재연, 그래픽, 삽화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유발한 보도 건수는 전체 47.7%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윤정주, 2017). 재발방지를 위해서 수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 규제를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넘어선 가해자의 처벌규정을 새로운 기본법안에 얼마나 담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쟁점사항

조항	내용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수사사법기관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규제 - 미디어 규제는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해당 조항을 마련해 현재 개별법들의 방송 송출 규정을 통합해서 신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라. 예방교육

기본법에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면 기존 개별법의 교육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법 안에 담아내고 성인권교육, 인권교육 등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별도로 시행되던 교육을 통합적인 성인권교육으로 갈 필요성은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기존의 교육 내용 중 어느 한 부분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폭력유형과 대상별 재발방지 프로그램 실시와 통합적인 예방프로그램 구축은 내용상 상충되어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폭력예방교육은 피해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단순한 폭력예방뿐만 아니라 인권과 폭력감수성이 주요한 콘텐츠로 포함되어야 한다.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등 집행 종사자, 출입국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별도의 과정으로 필요하다. 또한 비교적 공공기관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민간 영역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아직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근거법령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법안의 제정을 통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무화 할 수 있을지 그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에 관해서는 기존의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간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표 III-11> 예방교육에 대한 쟁점사항

조항	내용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폭력별로 명시된 예방교육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조항은 통합되어야 한다. - 기본법에 예방교육 관련 조항이 마련되면 기존 개별법들의 관련 내용들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일단은 개별법들을 통합해서 기본법 안에 담아내고, 이후 성인권 교육, 인권교육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 통합할 경우 기존에 있던 폭력예방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구체적인 콘텐츠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전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 기존의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을 통합적인 인권교육으로 갈 필요성은 있

조항	내용
	<p>나,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들을 묶었을 때 개별법에 근거해서 시행되었을 때는 모두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각 유형의 폭력중 한쪽의 비중이 줄어들 위험이 존재하다(여성지원시설협의회, 전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재발방지프로그램실시와 통합적인예방 프로그램 구축은 내용의 상충으로 인한 일관성 결여될 수 있다(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 <p>○ 예방교육의 대상과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예방은 기관 중심이 아닌 피해자 및 수요자, 강사 중심으로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젠더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적 인권, 폭력감수성 등을 콘텐츠 내용으로 하는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경찰 등 집행기관 종사자들의 교육은 일반 공공기관 대상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여성의전화). - 출입국관련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다(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 민간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이란 용어 사용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한국여성의전화). - 여성과 남성 양성을 전제로 한 폭력관계에 대한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장애여성공감). <p>○ 현재 개별법의 체계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교육은 젠더폭력 전체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되면 어떻게 기존의 교육과정을 조절할 것이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젠더폭력예방교육은 기존의 통합교육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p>

마. 자료생산 · 실태조사 및 국제공조

젠더폭력에 대한 폭력유형을 통합할 수 있으며,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료생산과 실태조사는 별개의 조항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자료생산은 신규 통계의 생산과 기존통계를 통합한다는 목적을 위해 전반적인 자료생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살인, 살해, 난폭운전, 무고죄,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경찰청과 검찰 등의 기관에서 통계 생산 시 성별분리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계청 본청에서 젠더폭력과 관련된 전국적인 데이터 구축

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료생산을 통해 확보한 통계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연계되어야 한다. 기존 「양성평등기본법」 내의 실태조사를 본 법안에 포함하되, 그 대상과 수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실태조사의 세부조항의 내용에는 폭력에 대한 불안감, 신중 폭력, 피해자 조사 등 성폭력에 국한되지 않는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각 개별법의 실태조사는 각각 조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별법의 해당조항의 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본법의 실태조사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개별법의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표본조사 시점부터 수행해야한다면 그 실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승인통계(기본조사)의 경우 통계청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므로 현실적으로 얻고자 하는 세부적인 정보를 정확히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승인통계(기본조사)가 아니라 부가조사로 편성하여 현안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관련 데이터생산, 통계모니터링, 추적조사를 위해 관련 기구설치와 국제공조와 협력을 위해 표준화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현장 담당자가 젠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III-12> 자료생산 및 국제공조에 대한 쟁점사항

조항	내용
자료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생산은 크게 신규통계의 생산과 기존통계의 통합이라는 목적 하에서 전반적인 자료생산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실태조사와 자료생산이 별개의 독립된 조항으로 존재하지만, 자료생산을 통한 통계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생산과 실태조사가 연계되어야 한다. ○ 살인, 살해, 난폭운전, 무고죄, 데이트폭력, 온라인폭력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경찰청, 검찰 등에서의 통계생산 시 성별분리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계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본청에서 전국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와 자료생산(통계)은 별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양성평등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조항(제10조)은 양성평법에 그대로 두고 기본법에서

조항	내용
	<p>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법의 성희롱 실태조사 조항(제32조)은 가져오되, 어디까지 기본법 안에 포함할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고평법과도 충돌될 여지가 있음.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는 포함하되,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고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 실태조사의 세부조항은 폭력에 대한 불안감, 신종 폭력, 피해자 조사 등 성폭력에 국한되지 않는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조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각 개별법의 실태조사는 저마다 조사목적, 맥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별법의 관련 내용을 붙여 넣어 기본법의 실태조사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개별법의 관련 내용을 다 헤쳐서 표본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실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국가승인통계(기본조사)의 경우 통계청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므로 기본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국가승인통계(기본조사)가 아니라 부가조사로 편성하여 현안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계 및 조사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데이터생산, 통계모니터링, 추적조사 등이 가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그러나 통계를 집계하는 현장 담당자가 젠더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선연적 차원에 머물러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안전영향평가’, ‘여성안전지수’ 라는 용어자체가 추상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자료가 생산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국제공조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국제통계자료 등에 사례국가로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

현재 중앙에만 추진체계가 있고 지자체에는 추진체계가 없어 실질적으로 정부와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젠더폭력을 근절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다 일관된 지원 및 종사자 지원 등 현장 지원 및 역량와 각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간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젠

더폭력방지(혹은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 폭력피해자의 지원은 개별 폭력법의 근거조항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폭력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의 질이 균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지원이 차이가 나므로 형평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혹은 다양화되는 폭력의 유형을 포함하여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폭력피해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일관된 추진체계를 갖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각 폭력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지원이 차이가 나므로 형평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혹은 다양화되는 폭력의 유형을 포함하여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폭력피해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각 현장단체간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일관된 추진체계를 갖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전체적인 관점을 가진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점차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부가업무로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폭력피해자를 통괄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뿐더러 폭력유형별 피해자별로 받는 지원의 내용을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통합된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도 절실하지만 현재와 같이 분절화되어 있는 시설중심의 체계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힘든 실정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 하고, 양상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종사자의 계획적인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의 실시가 보다 일관되고 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종사자의 호봉제, 자격부여, 종사자 역량강화, 보수교육, 교육훈련 등을 고려 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전체 폭력피해자 지원기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것도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방식이 아닌 별도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간담회에서도 운영지원, 종사자지원 등 현장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

담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과 상담소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담기구 설치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따라서 정부부처 내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을 논의하거나 기존의 추진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여성폭력 내지는 젠더폭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흥원의 구조, 조직도, 기능 등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어야 하며, 명칭 역시 전담기구가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현장단체의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향후 추진체계의 설치와 운영의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부처 내에서도 의견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젠더폭력방지(혹은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의 시설과 상담소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담기구 설치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부처 내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을 논의하거나 기존의 추진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III-13>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 설치에 대한 쟁점사항

조항	내용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의 설치와 운영의 경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 양평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부처 내에서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위원회 설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구속력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실무위원회, 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함. 특히 정책책임관의 지정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기본법에는 되도록 유명무실한 문구는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설립 근거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며, 다른 기본법의 전담기구의 설치근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여가부) 운영지원, 종사자지원 등 현장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국회/현장)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 때문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흥원의 구조, 조직도, 기능 등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어야 하며, 명칭 역시 전담기구가 아닌 다른 용어를

조항	내용
	<p>사용해야 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보조금지원 방식보다는 독립적인 직영체제로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추진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추진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p>관련기관 설치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근거만 가져오되,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그대로 개별법에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나 ○ 종사자 처우 개선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호봉제, 자격부여, 종사자 역량강화, 보수교육, 교육훈련 등에 관해 고려가 필요함. 이때 사회복지사법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됨 ○ 피해자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보조금지원방식이 아닌 별도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포함해야 함. 즉, 관련 특별지원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민간단체 + 보조금지원 + α(특별지원)'의 지원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별도로 젠더폭력실무위원회 구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앙에만 추진체계가 있고 지자체에는 추진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젠더폭력/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1366의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개별법 사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되, 법과 집행간의 괴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내부의견 및 현장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통합지원센터 등의 유사한 기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신설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기존 시설/상담소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사 기관설치 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한국여성의전화, 여성지원시설협의회). - 법제정 시 기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근거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지원시설협의회).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지원센터 내 특수파트별 부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 새로운 부서 신설보다 기존 체계보강이 우선이다(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 - 전담기구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한국여성단체연합). - 각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지원이 다르니 형평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방향

1. 법안 도출의 방향성
2.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할 경우
3.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경우

1. 법안 도출의 방향성

기존의 개별법에서 나타난 법률 간의 중복과 혼란의 문제와 새로운 폭력 유형으로 나타나는 사각지대 확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의 법의 개정방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해서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과 둘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새롭게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젠더폭력의 근본원인이 성별 위계구조와 성별 간 권력불평등에서 나타난 성차별의 한 형태로 보고 이러한 젠더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기본 목표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개별법 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완점 등 쟁점사항들을 확인, 정리하고,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해외의 법률의 형식과 범위 및 내용을 정리한 결과, 연구진은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젠더)폭력 관련된 내용을 통합시키는, 두 가지 중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기본법 속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혹은 젠더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임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등 기존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폭력의 내용과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과 같은 신종 폭력 유형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여성(젠더)폭력의 의미를 확대하는 포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의 법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여성(젠더)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목표치의 설정을 법률 속에 포함시켜야 하고,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젠더)폭력 방지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계획과 발생하는 중복사항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관계부처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기본계획과의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적과 과제, 수, 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체계에 관해서 여성(젠더)폭력에 관한 별도의 추진체계의 설치를 제안한

다. 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시 실행력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해서 현재 각 개별법 마다 다른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통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그리고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모두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료비 지원은 「성매매방지법」에, 전담의료기관 지정은 「성폭력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에 있다.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 포함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더 나아가 새롭게 규율해야 할 폭력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비입소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피해자의 권리 조항에 ‘피해자는 비입소 피해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조문 구성에 있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의 표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각 개별법의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여성(젠더)폭력예방교육으로 명명하고(여성(젠더)폭력예방교육 조항 내), 기존 개별법의 폭력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조율해야한다. 그러나 각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각 개별법 안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젠더)폭력 통계의 수집과 산출, 공유, 체계적 관리의무를 여성(젠더)폭력 관련 통계 조항에 명시하고, 데이터생산, 통계모니터링, 추적조사 등을 가능하도록 여성(젠더)폭력 관련 통계 조항과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 조항에 각각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실태조사에 관련해 여성(젠더)폭력의 범위 및 개별법의 관련 조항과의 관계는 현재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외 실태조사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향후 실태조사 기획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조사를 통해서 집계된 여성(젠더)폭력의 통계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조사항목으로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젠더)관련 통계는 국제간 비교시 사례국가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목이 생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여성(젠더)폭력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연도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여성(젠더)폭력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도 없다.

2차 피해방지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2차 피해 방지 조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수사사법기관, 언론기관 등이 2차 피해를 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재발방지 조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젠더)폭력 행위자 양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보다 체계적으로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간 연계를 지원하고, 여성(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양상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시설 종사자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재교육의 실시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젠더)폭력에 관한 보다 일관되고 계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기구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운영과 지원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과 통합할 경우

가. 법률의 목적과 기본 이념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조항에 여성(젠더)폭력에 대한 관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다. 법의 목적이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한다.

원안 ³³⁾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방향	기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한다.
수정내용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젠더에 대한 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이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안전하고 존중되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³⁴⁾

제2조 기본이념 안에 모든 개인, 특히 여성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실행을 위한 법안, 정책의 실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 한다.

원안	제1장 총칙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수정방향	기존 법안의 내용을 수정 및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
추가내용	모든 개인, 특히 여성이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33) 이하 원안으로 표시된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으로 조항과 일부 조문의 내용을 표시하였다.

34)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11. v. 2111. Article 1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함

	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을 입안하고, 정책의 실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

나. 정의

제3조 정의 조항에서 일부의 내용을 삭제하고 여성(젠더)폭력의 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한다. 조문은 크게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등 기존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과 같은 신종 유형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³⁵⁾

원안	제1장 총칙
	<p>제3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5) 관련 내용은 4장 3절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나 정의조항을 참고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정방향	성희롱에 국한 된 기존의 내용 수정 및 여성(젠더)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관한 용어 정의를 포괄하도록 수정한다.
수정내용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성(젠더)폭력이 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한다.

원안	제1장 총칙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방향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한다.
수정내용	없음

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조항은 유지하되, 여성(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다.

<p>원안</p>	<p>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p> <hr/> <p>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p>
<p>수정방향</p>	<p>여성(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p>
<p>수정내용</p>	<p>여성(젠더)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는 연도별 국가행동계획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다.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동계획에 따라 여성(젠더)폭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기존의 양성평등실태조사의 내용은 여성(젠더)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해야 하나 별도의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지는 추후의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여성(젠더)폭력 통계의 수집과 산출 및 공유, 체계적 관리 의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원안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정방향	기존 법안의 수정 및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
수정내용	모든 유형의 여성(젠더)폭력을 포함하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젠더)폭력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기 위한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젠더)폭력통계 구축을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여성(젠더)폭력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마.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

위원회는 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등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여성(젠더)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원안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p>제11조(양성평등위원회)</p> <p>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p>

	<p>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p>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p>
수정방향	<p>양성평등위원회와는 별도로 여성(젠더)폭력 방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p>
수정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원안 유지하되 여성(젠더)폭력 방지 업무와 관련된 여성(젠더)폭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여성(젠더)폭력방지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여성(젠더)폭력방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국가행동계획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국가행동계획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여성(젠더)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바. 전담기구

여성(젠더)폭력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체계적으로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간 연계를 지원하고,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여성(젠더)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나날이 양상이 다양해지는 여성(젠더)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종사자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의 실시가 보다 일관되고 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기관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운영과 지원 및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수정방향	여성(젠더)폭력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수정내용	여성(젠더)폭력 방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운영과 지원 및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체계적인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간 연계 지원 ②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③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의 실시

사. 기본시책

양성평등정책 촉진(제14조~제19조)과 양성평등참여(제20조~제28조)에 대한 조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한다.

원안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2절 양성평등참여
	제1절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교육),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제2절 제20조(적극적 조치),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공직 참여), 제23조(정치 참여),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수정방향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한다.
수정내용	없음

아. 예방교육

현재 「양성평등진흥법」의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조항에 대한 규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성매매예방교육 5조의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 「성폭력방지법」의 5조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등 여성(젠더)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법률규정은 각각의 개별법 속에 흩어져서 규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폭력예방교육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성이나 통합성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여성(젠더)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전체적인 시각에서 여성(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여성(젠더)폭력의 통합교육을 위해 해당조항의 내용을 여성(젠더)폭력 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체한다. 주요한 내용은 국가기관 등이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고정적 성역할, 상호 존중, 대인 관계에서의 비폭력적 갈등 해결, 성에 기반 한 젠더폭력,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시설과의 협조, 관

련공무원의 교육 등의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p>원안</p>	<p>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p> <hr/> <p>제29조(성차별의 금지)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수정방향</p>	<p>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성매매예방교육 제5조의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 「성폭력방지법」의 제5조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등 개별법 속에 흩어져 있는 법률들을 통합해서 전반적인 여성(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포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전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p>
<p>수정내용</p>	<p>여성(젠더)폭력 예방을 통한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젠더)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성(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고정적 성 역할, 상호 존중, 대인 관계에서의 비폭력적 갈등 해결, 성에 기반 한 젠더폭력,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여성(젠더)폭력을 예방하고 폭력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p>

	<p>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젠더)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피해자 지원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젠더)폭력예방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³⁶⁾</p>
--	---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의 내용 제32조 성희롱실태조사는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로 대체한다.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의 조항,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1절~41절)에 관한 조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한다.

원안	<p>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p>
	<p>제3장 제3절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복지증진) 제34조(건강증진) 제4절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양성평등주간), 제39조(여성친화도시), 제40조(국제협력),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p>
수정방향	<p>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신규조항을 신설한다.</p>
수정내용	<p>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신규조항에 다음의 내용을</p>

36)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11. v. 2111. Article 12, Article 14

	<p>포함하도록 한다</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젠더)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젠더)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기타사항</p>	<p>제3절 제33조(복지증진), 제34조(건강증진), 제4절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양성평등주간), 제39조(여성친화도시), 제40조(국제협력),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한다.</p>

자. 기타

제4장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제42조~제44조),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제45조~제51조), 제6장 보칙의 관한 조항(제52조~제53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한다.

	<p>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6장 보칙</p>
<p>원안</p>	<p>제4장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제43조(기금의 용도),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장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p>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9조(청문),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6장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3조(국회 보고)
수정방향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한다.
수정내용	없음

3.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경우³⁷⁾

가.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은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 이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안전하고 존중되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⁸⁾ 그리고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이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을 입안하고, 정책의 실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나. 정의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여성(젠더)폭력은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며,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지배를 유지시키고 여성의 온전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여성(젠더)폭력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종속적 위치에 처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 기제 중 하나이다.³⁹⁾

② "여성폭력"이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젠더폭력의 행위를 의미한다. 공적이든 사적 생활에서 일어나든지,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와 고통을 준다고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독단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⁴⁰⁾

③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37) 기존 관련 법률과의 형식과 조항에 대한 참고사항은 부록을 확인한다. 법률명은 가칭으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제정할 경우 정의의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한다.

38)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11. v. 2111. Article 1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함

39) UN, General Assembly, 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es/48/104

40) UN, General Assembly, 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es/48/104 Article 1

추행, 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언동을 말한다.⁴¹⁾

④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⁴²⁾ 이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⁴³⁾

⑥ "데이트폭력"이란 로맨틱 한 사회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 행해진 폭력을 지칭한다.

⑦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해서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여성(젠더)폭력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정의 조항 참고

4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여성(젠더)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젠더)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여성(젠더)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여성(젠더)폭력과 관련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젠더)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여성(젠더)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⁴⁴⁾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젠더)폭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본계획·평가 모니터링

1) 여성(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여성(젠더)폭력방지를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행동계획에는 국내외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 추진

44)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11. v. 2111. Eu, Article 5

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그 밖에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은 행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행동계획은 신설되는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행동계획을 여성가족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행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동계획에 따라 여성(젠더)폭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은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지역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시장을 포

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젠더)폭력방지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계획은 행동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행동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추진체계

1)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

①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등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여성(젠더)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실무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여성(젠더)폭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이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기본시책

1) 피해자의 권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젠더)피해자는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피해자는 수사·재판·보호·진료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나 행위자 및 행위자의 가족의 피해자 비난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여성(젠더)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활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2항의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동법의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피해자 정보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보호기간 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한 피해자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4) 2차 피해방지와 재발방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젠더)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젠더)폭력 유형별, 대상별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하여야 한다.

5) 여성인권의식 제고와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감수성 확산 및 여성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포함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법률에 따라 여성(젠더)폭력 추방주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젠더)폭력방지와 여성인권 증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자. 전담기구설치 및 지원

① 여성(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여성(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 개발·보급,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지원,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구축·운영, 여성(젠더)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종합 관리시스템 운영,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 여성(젠더)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 신설된 전담기구가 아닌 자는 신설된 전담기구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자. 국제공조 및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젠더)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여성(젠더)폭력방지 및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카.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고정적 성역할, 상호 존중, 대인 관계에서의 비폭력적 갈등 해결, 성에 기반 한 젠더폭력,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여성(젠더)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피해자 지원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예방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⁴⁵⁾

타. 자료생산

1) 여성(젠더)폭력 관련 통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젠더)폭력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여성(젠더)폭력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젠더)폭력 통계 구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여성(젠더)폭력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45)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11. v. 2111. Article 12, Article 14

2)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젠더)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젠더)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여성(젠더)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연구자료>

- 고미경(2017).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인권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3.7.).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5). 국제개발협력과 젠더용어해설집.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젠더분과 보고서.
- 김양희(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p1-62.
-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 모델 연구. 한국 법제 연구원.
- 배복주(2017). 사회적 에 대한 통합적·교차적 관점의 폭력근절정책 마련.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집(2017.3.7.).
- 우기택(2016). 기본법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2016년 9월호.
- 윤덕경·이미정·천재영·차인순·윤정아(201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정주(2017).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여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집(2017.3.7.).
- 이미경(2017). 성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집(2017.3.7.).
- 전윤경(20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9권 3호. p113-144.
- 정미례(201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집(2017.3.7.).
- 조주은(2017).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모색하다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성관련범죄&여성전문검사 커뮤니티·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세미 토론회 (2017.12.7.).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가족부(2013).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활동 자료집

허오영숙(2017).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모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집(2017.3.7.).

형사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2017).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선진사례 조사 국외 출장보고서(영국 스코틀랜드). 출장보고서

Majoo Rashida(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UN Human Rights Council, p8.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483&cid=58765&categoryId=58768> (검색일: 2017.11.29.)

문학비평용어사전. “젠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865&cid=41799&categoryId=41800> (검색일: 2017.11.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개관”.

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CTS_SEQ=31941&AST_SEQ=316&ETC (검색일: 2017.11.27.)

스웨덴정부. “스웨덴 형법전(Penal Code)”.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judicial-system/the-swedish-penal-code/> (검색일: 2017.10.30.)

유엔난민기구. <http://www.unhcr.org/sexual-and-gender-based-violence.html> (검색일: 2017.11.30.)

유엔난민기구 한국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unhcr_korea/220953699808 (검색일: 2017.11.30.)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2011.11.5.). CETS No.210.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210>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UN General Assembly, 1993.12.20.) A/Res/48/104. <http://www.un.org/documents/ga/res/48/a48r104.htm>

부 록

1. 기존법률과의 범위와 형식의 비교

구분	양성평등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건강가정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15년 본원 연구)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가칭) 2017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 념) 제3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 념) 제3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 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 념) 제3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제6조(국가 등과 가정) 제7조(국민의 책임) 제8조(외국인 에 대한 적용)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구분	양성평등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건강가정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15년 본원 연구)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가칭) 2017
법률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기본계획 수립)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7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여성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협조)	국가행동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협조

구분	양성평등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건강가정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15년 본원 연구)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가칭) 2017
추진체계	제11조(양성 평등위원회) 제12조(양성 평등실무위 원회 등) 제13조(양성 평등정책책 임관의 지정 등)	제20조(사회 보장위원회) 제21조(위원 회의 구성 등)	제15조(범죄 피해자보호 위원회) 제24조(범죄 피해구조심 의회 등)	-	제10조(고용 정책심의회)	-	-	-	젠더폭력방지 위원회(가칭)
기본시책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 영향분석평 가) 제16조(성인 지 예산) 제17조(성인 지 통계) 제18조(성인 지 교육)	제22조(평생 사회안전망 의 구축·운영) 제23조(사회 서비스 보장) 제24조(소득 보장)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8조(형사절 차 참여 보장 등) 제8조의2(범 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9조(사생활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	-	-	제10조(피해자 의 권리)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2조(피해자 정보 보호) 제13조(2차 피해 방지) 제14조(재발방 지) 제16조(여성인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정보 보호 2차 피해 방지 재발방지 여성인권의식 제고 독자적, 우선적

94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구분	양성평등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건강가정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15년 본원 연구)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가칭) 2017
	제19조(국가 성평등지수 등)		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10조(교육· 훈련)					권의식 제고) 제17조(홍보) 제18조(국제협 력)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보조금지원이 아닌 별도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방교육	제30조(성폭 력·가정폭 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 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	제32조(건강 가정교육)	-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	제15조(예방교 육)	양평법의 성희롱 관련 조항을 가져오는 것으로
실태조사	제10조(양성 평등 실태조사 등)	-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제20조(가족 실태조사)	-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	제9조(실태조 사)	양평법의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그대로

구분	양성평등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건강가정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15년 본원 연구)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가칭) 2017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개발)			두는 것으로
관련 기관 설치 및 지원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46조(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제33조(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4조(보조금)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6조(감독 등)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 제12조(문화행사)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등)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5조(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19조(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제20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1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2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제23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제24조(지역연대 지원)	지금 있는 그대로 둬 젠더폭력통합지원센터, 1366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여가부 내부회의 필요

96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구분	양성평등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건강가정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15년 본원 연구)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가칭) 2017
	의 지원)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0조(수수 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평가 및 모니터링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연도 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9조(사회 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3조(연도 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 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3조(고용 영향평가)	-	-	제6조(여성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성과지표
국제 공조 및 협력	제40조(국제 협력)	제31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	-	제14조 (국제협력)	-	제20조(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8조 (국제협력)	젠더폭력 관련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분	양성평등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건강가정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15년 본원 연구)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가칭) 2017
자료생산	제17조(성인 지 통계) 제19조(국가 성평등지수 등)	제32조(사회 보장통계)	-	제10조(지역 사회자원의 개발·활용) 제11조(정보 제공)	제13조의3(재 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 산망의 구축·운영 등) 제15조(고용 · 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5조의2(고 용형태 현황 공시) 제16조(인력 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	제5조(연차 보고) 제30조의3(문 화산업통계 의 조사)	제25조 (백서발간)	젠더폭력통계 젠더폭력국가 지식센터(가칭)

2. 상세 법률조항의 비교

위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관련한 현행 기본법 및 해외 법률사례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범죄자 피해보호법」, 「건강가정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진흥기본법」, 「유럽평의회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등이 있다. 다음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관련 현행 기본법 및 해외 법률사례의 법률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관련 상세 법률조항들이다.

가. 법률의 목적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

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제1장 - 목적, 정의, 평등 및 차별 금지, 일반 의무

제1조 목적

1.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며 여성 및 가정 폭력의 방지, 기소, 제거
- b.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기여하고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 것을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 간의 실질적 평등을 증진
 - c. 여성 및 가정 폭력의 모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틀, 정책, 조치를 수립
 - d. 여성 및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증진
 - e. 여성 및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법당국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을 제공
2. 당사국들의 효과적인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약은 특정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한다.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목적과 관련한 현행 기본법 및 해외 법률사례의 범위와 형식을 비교한 결과 ‘성매매를 포함시킬 것인가’와 ‘양성평등법의 성희롱부분을 목적조항에 가져올 것인가’의 여부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나. 기본이념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1.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3.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제1장 - 목적, 정의, 평등 및 차별 금지, 일반 의무

제4조 기본권, 평등 및 차별 금지

1. 당사국들은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이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비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원칙 및 평등 원칙의 실질적인 실현을 보장하는 국가 헌법 또는 기타 법안을 구현
 -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
 -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과 관행을 폐지
3.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특히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성별, 젠더,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혹은 기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 재산, 출생, 성적 취향, 젠더 정체성, 나이, 건강 상태, 장애, 혼인 상태, 이주 또는 난민 혹은 기타 지위에 의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성에 기반 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에 의해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

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제1장 - 목적, 정의, 평등 및 차별 금지, 일반 의무

제3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 a. “젠더폭력”이란 인권 침해와 여성 차별의 한 형태로 이해되며 공공 또는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협, 강제 또는 자유의 독단적 박탈을 포함하여 신체적, 성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행위를 의미
- b. “가정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현재 동일한 거주지에 머무는지 혹은 머물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 단위로 또는 전/현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폭력의 모든 행위를 의미
- c. “젠더”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 행동, 활동과 특정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특성을 의미
- d. “성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란 여성이란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혹은 여성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의미
- e. “피해자”란 a 및 b에 명시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을 의미
- f. “여성”은 18세 미만 소녀를 포함

라. 국가 등의 책무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임)

-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 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Council of European Convention」

제1장 - 목적, 정의, 평등 및 차별 금지, 일반 의무

제5조 국가의 의무와 실사

1. 당사국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자제하고 국가 당국, 공무원, 대리인, 기관 및 국가를 대표하는 기타 행위자들이 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들은 비국가적 행위자가 행한 이 협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예방, 조사, 처벌 및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기본계획·평가 및 모니터링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기본계획 수립)

-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

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문화기본법」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추진체계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된 결과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④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⑥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

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기본시책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

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 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

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

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 ①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상담소의 장은 본인 또는 상담소 직원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업소 및 지역을 현장방문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성매매피해자들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들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23조(의료비의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들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25조(비용의 보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2.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에 대한 안내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
 - 가. 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나.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다. 이용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지도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 ①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음은 기본시책과 관련하여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에서 삭제 및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제4조의 5, 제4조의 7, 제8조의 5, 제9조,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9조의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 3,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제8조, 제9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3조, 제33조의 2, 제35조.

자. 관련기관 설치 및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6조(감독 등)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문화행사)

-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관련사례별칙규정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관련사례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관련사례별칙규정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관련사례

-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관련사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1. 생계비
 - 2. 아동교육지원비
 - 3. 아동양육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호시설의 입소) 관련사례

-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

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보호시설의 퇴소)

-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삭제 [2015.2.3]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별칙규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④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폐지·휴지 등의 신고)

- ①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인가의 취소 등) 벌칙규정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경비의 보조)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보건 상담 및 지도
 - 2. 치료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의료비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벌칙규정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관련사례벌칙규정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들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5.6.22.>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②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 ③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 법인
 - 2. 법률구조법인
 - 3. 사회복지법인
 - 4. 그 밖의 비영리법인
-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 ①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보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 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 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 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본원 2015년 연구)」

제19조(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의 욕구 와 불편 사항의 해소 위기에 처하거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 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전화를 설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

제20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젠더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젠더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상담소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관계 법률에 따른 상담소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상담소의 업무와 그 밖에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시설의 업무와 그 밖에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3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 ①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인권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젠더폭력 피해자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
 2.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3.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 개발·보급
 4.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지원
 5.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구축·운영
 6. 젠더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종합 관리시스템 운영
 7.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
 8. 젠더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그 밖에 여성인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⑤ 인권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 법에 따른 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정부는 인권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연대 지원)

- ①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안의 피해자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 상담, 구조, 보호 자립, 등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관리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지역연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Council of European Convention」

제10조(조정기구)

- ① 협약에서 다루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조치의 실행, 모니터링 평가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식 기구를 지정하고 설립해야 한다.
- ② 당사국들은 본 조항에 따라 지정되고 설치된 기구들이 본 협약 8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③ 당사국들은 본 조항에 따라 지정되고 설치된 기구가 다른 당사국의 상대기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들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관련기관 설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성폭력방지법」 제18조의 삭제 개정이 필요하다.

자. 국제공조 및 협력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국제협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건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본원 2015연구)」

제18조(국제협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젠더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젠더폭력방지 및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카.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

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ouncil of European Convention」

제3장 예방

제12조 일반 의무

1. 당사국들은 편견, 관습, 전통 및 여성에 대한 열성의식 혹은 남녀에 대한 고정 관념적 역할에 근거한 기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자연인 혹은 법인이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 장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특정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다루어야 하며 모든 희생자의 인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남성과 소년이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당사국들은 문화, 관습, 종교, 전통 혹은 이른바 “명예”가 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화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6. 당사국들은 여성의 권한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교육

1. 당사국들은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비고정관념적 성역할, 상호 존중, 대인 관계에서의 비폭력적 갈등 해결, 성에 기반한 젠더폭력,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 등에 관하여 공식 커리큘럼 및 모든 교육수준에서 학습자의 발전 역량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레저시설, 미디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 3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삭제 및 개정이 필요하다.

타. 실태조사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

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법」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Council of European Convention」

11조 데이터 수집 및 연구(Data collection and research)

1. 협약의 실행을 위해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본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된 개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한다;
 - b.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발생률과 유죄판결율, 협약의 실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의 영역에서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2.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인구 기반 조사를 실시하여 본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의 발생과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국제적인 협력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협약 66조에 명시된 전문가 집단에게 본 11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들은 본 11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 3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삭제 및 개정이 필요하다.

파. 자료생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

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32조(사회보장통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Council of European Convention」

11조 데이터 수집 및 연구(Data collection and research)

1. 협약의 실행을 위해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본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된 개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한다.
 - b.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발생률과 유죄판결율, 협약의 실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의 영역에서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2.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인구 기반 조사를 실시하여 본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의 발생과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국제적인 협력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협약 66조에 명시된 전문가 집단에게 본 11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들은 본 11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3. 신종성폭력에 대한 규정

가. 스토킹

- 스토킹에 관한 규정 신설 :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법」(VAWA)의 정의 : "스토킹"이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인 행동을 지칭하며 이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태를 유발한다.
 - (A) 자신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 (B) 상당한 정신적 고통

나. 디지털기반 성폭력

○ 현행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4조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조 1항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규정의 문제점

- 1)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감정을 드러내는 많은 표현 중 하나인 ‘성적 수치심’이 성폭력 처벌과 관련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2) 카메라 이용 촬영의 피해 형태는 크게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촬영자가 단순히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경우는 인터넷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사후에 완벽한 삭제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
- 이러한 유포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1항과 2항에서 유포하는 행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적시된 행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신체를 촬영 한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제시’에 해당하지만, 위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없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이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 향후 개정방향

- 1)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구성요건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 2) 유포행위의 법적형 강화
- 3) 선고유예와 수간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4) 가안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전윤경, 2016: 140)

다. 데이트성폭력

- 데이트폭력의 정의조항 신설 : "데이트폭력"이란 로맨틱 한 사회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 행해진 폭력을 지칭한다.

라.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규정 신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이나 온라인기반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와 전담재판,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진술조력인의 야성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법률상담을 포함한 법률적 지원, 긴급전화설치 및 운영(피해 신고의 접수, 상담, 관련기관 연계, 긴급 구조의 지원),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영상물 촬영 보존,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대한 증인신문. 불법온라인영상물 삭제비 지원, 수사기관의 협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신고의무,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for the Legislation of Gender Violence Prevention

Mihye Chang
Jungim Hwang
Mijeong Lee
Deukkyoung Yoon
Inseon Lee
Jaeyeong Cheon
Sanghyuk Kim

This study seeks to 1) look into the major issues pertinent to the legislation of gender violence prevention laws and 2) suggest areas that need considering when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Gender Violence Prevention」 in the future. The main purpose of such legislation is to abolish gender inequality in terms of social structure. Consequently, a gender perspective should be clearly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Under current law, gender violence issues are treated in a limited manner and only address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However, as gender violence is getting diverse in type, the need arises to legislate further regulations related to gender violence. Legislating individual laws here and there can solve the problem at hand only up to a certain degree. There can be redundancy between existing and newly drafted laws, causing

confusion. Also, with individual laws, it would be difficult to solve problems that fall between the cracks. The purpose behind legislating a framework act is to "1) mediate a fundamentally diversified set of values and systems on a national level and 2) provide legislation that can coherently and effectively bring about implementation of policies." Considering this purpose, then, it becomes clearly evident that indeed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Violence Prevention」 is necessary.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on the following: 1) existing legislation, 2) opinions and suggestions from related field organizations,³ 3) gender violence and other related concepts, 4) legal system and contents for the Framework Act, and 5) provision of the 「The Framework Act on Gender Violence Prevention」 (draft proposal). For the research, the study employed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ologies: 1) literature review, 2) meetings with field organizations, 3) expert policy consultation and Focus Group Interviews, and 4) gender violence prevention forum.

A significant portion of concern when legislating a framework act on gender violence prevention rises from the ambiguity of the term 'gender' itself. Gender violence is the general term used to capture violence that occurs as a result of the normative role expectations associated with each gender. It includes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threats, coercion, arbitrary deprivation of freedom, and economic disenfranchisement. With the term gender violence, it can be elucidated that violence against women is a form of violence based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lso, the clear definition of the term 'gender violence' can be a major driving force when promoting anti-violence movement in the future.

Just the mere fact of legislating a framework act is meaningful in that it will notify the public of the law on gender violence prevention and will also act as a catalyst in changing and reforming the public mind set on the issue. For the Act not to remain merely as a 'symbol' of some sorts,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during its initial drafting. Effort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xpansion of the concept of violence victims, expansion of content and scope of gender violence, setting down of principles for victim protection, provisions for victim support, and strengthening of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Based on guaranteeing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s two ways for legislation: 1) incorporating new laws on gender violence prevention into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2) legislation a separate 「Framework Act on Gender Violence Prevention」. The basic direction of the proposed bill is as follows. The bill views the gender hierarchy and power inequality between gender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gender violence. It stipulates then the basic objective is to prevent and uproot all gender violence. In addition, a National Plan for Action for Gender Violence Prevention is set up within the Framework Plan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This study suggests the creation of an exclusive entity to promote gender violence prevention and a setting up of a separate committee which would deliberate the details of the Framework Plan. In regards to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 is need to bring together current laws that are scattered and varying in size and detail. Currently, regulations on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exists scattered throughout different individual laws. Such regulations need to be consolidated and coordinated. The Framework Act should stipulate obligations for the collection, production sharing,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gender violence statistics.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tatistics should be created and the organization should conduct data creation, statistics monitoring, and follow-up studies. As baseline, the Framework Act should stipulate the obligation to conduct actual-conditions survey of national gender violence. Other related actual-condition surveys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future additional surveys. Provisions should be made in the Framework Act to prevent secondary and recurring violence. Also, the Act should include details on the operation, support, and assessment of facilities that support gender violence victims. The

Act should further include details on the creation of standardized international statistical data so as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uture.

연구보고 2017-000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17년 12월 28일 인쇄

2017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정 현 백

발행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731-10